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530호 2020. 7. 20(월)

## 차 례

### 훈 령

-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35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규정 - 1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28호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2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3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8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3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85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3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고시 ----- 89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3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변경 고시 ----- 98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08호 행복한 서로이음(임대주택) 입주희망자 모집공고 - 10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16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10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41호 인천광역시 서구 신거북시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116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7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훈령 제359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규정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 관련)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b>합 계</b>			<b>1,253</b>	
	정무직	소계	1	
	일반직	소계	<b>1,248</b>	
		2급	1	행정 1
		4급	7	행정 2, 기술 2, 행정·기술 3
		5급	71	행정 14, 의무 2, 운전 1, 행정·사회복지 4, 행정·공업 2, 행정·녹지 1, 행정·보건 1, 행정·환경 2, 행정·시설 10, 행정·사회복지·공업 2, 행정·사회복지·농업 1, 행정·사회복지·녹지 3, 행정·사회복지·보건 3, 행정·사회복지·환경 2, 행정·사회복지·시설 4, 행정·사회복지·방송통신 1, 행정·공업·농업 3, 행정·공업·시설 1, 행정·녹지·시설 2, 행정·보건·환경 2, 행정·보건·시설 1, 행정·환경·시설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행정·보건·의무·간호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3
		6급	298	행정 89, 세무 18, 전산 1, 사회복지 17, 속기 2, 공업 8, 농업 1, 녹지 6, 수의 1, 보건 6, 의료기술 2, 간호 1, 환경 6, 시설 22, 방송통신 2, 운전 5, 전화상담운영 1, 기계운영 1, 사무운영 2, 행정·세무 12, 행정·사회복지 37, 행정·공업 2, 행정·농업 1, 행정·녹지 2, 행정·보건 5, 행정·환경 6, 행정·시설 11, 행정·방송통신 2, 사회복지·간호 1, 공업·환경 1, 녹지·시설 1, 보건·간호 1, 보건·환경 1, 식품위생·간호 1, 의료기술·간호 3, 환경·시설 1, 시설·방재안전 1, 행정·세무·공업 1, 행정·세무·농업 1, 행정·공업·시설 2, 행정·보건·간호 2, 행정·보건·환경 1, 행정·환경·시설 1, 보건·의료기술·간호 7, 식품위생·의료기술·간호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1
		7급	364	행정 137, 세무 18, 전산 6, 사회복지 44, 공업 10, 농업 2, 녹지 8, 수의 1, 해양수산 1, 보건 17, 의료기술 4, 간호 8, 환경 13, 시설 55, 방재안전 1, 방송통신 2, 운전 15, 기계운영 1, 사무운영 4, 행정·세무 3, 행정·사회복지 4, 행정·환경 1, 행정·시설 3, 농업·수의 1, 보건·간호 1, 식품위생·의료기술 2, 보건·의료기술·간호 2
	8급	303	행정 116, 세무 9, 전산 1, 사회복지 51, 공업 7, 농업 1, 녹지 6, 보건 7, 의료기술 1, 간호 29, 환경 13, 시설 29, 방송통신 3, 운전 6, 전화상담운영 1, 기계운영 1, 사무운영 1, 행정·전산 1, 행정·사회복지 7, 행정·농업 1, 행정·간호 1, 행정·시설 3, 공업·보건 1, 공업·환경 1, 보건·간호 1, 식품위생·의료기술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3, 보건·의료기술·간호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9급	204	행정 84, 세무 14, 사회복지 38, 공업 8, 농업 1, 녹지 5, 보건 3, 의료기술 2, 환경 15, 시설 20, 방재안전 2, 방송통신 3, 운전 2, 행정·사회복지 4, 행정·보건 1, 행정·환경 2
	별정직	계	3	
		7급	1	일반비서 1
		8급	1	일반비서 1
		9급	1	일반비서 1
	연구직	계	1	
	연구사	1	기록연구사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구 분 청	계		784	
	정무직	소계	1	
	일반직	소계	779	
		2급	1	행정 1
		4급	5	행정 1, 기술 1, 행정·기술 3
		5급	39	행정 12, 운전 1, 행정·사회복지 4, 행정·공업 2, 행정·보건 1, 행정·환경 2, 행정·시설 10, 행정·공업·농업 1, 행정·공업·시설 1, 행정·녹지·시설 1, 행정·보건·환경 1, 행정·환경·시설 1,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6급	208	행정 72, 세무 16, 전산 1, 사회복지 17, 공업 8, 농업 1, 녹지 5, 수의 1, 보건 5, 환경 6, 시설 20, 방송통신 2, 운전 2, 전화상담운영 1, 기계운영 1, 사무운영 1, 행정·세무 9, 행정·사회복지 10, 행정·공업 2, 행정·녹지 1, 행정·보건 2, 행정·환경 4, 행정·시설 11, 행정·방송통신 1, 공업·환경 1, 녹지·시설 1, 보건·환경 1, 환경·시설 1, 시설·방재안전 1, 행정·공업·시설 1, 행정·보건·환경 1, 행정·환경·시설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7급	237	행정 83, 세무 18, 전산 6, 사회복지 23, 공업 8, 농업 1, 녹지 7, 수의 1, 해양수산 1, 보건 11, 환경 13, 시설 50, 방재안전 1, 방송통신 2, 운전 1, 기계운영 1, 사무운영 1, 행정·세무 2, 행정·사회복지 2, 행정·환경 1, 행정·시설 3, 농업·수의 1
		8급	169	행정 70, 세무 9, 전산 1, 사회복지 19, 공업 7, 농업 1, 녹지 5, 보건 3, 환경 13, 시설 24, 방송통신 3, 전화상담운영 1, 기계운영 1, 사무운영 1, 행정·전산 1, 행정·사회복지 6, 행정·시설 3, 공업·보건 1
		9급	120	행정 42, 세무 13, 사회복지 5, 공업 8, 농업 1, 녹지 3, 보건 1, 환경 15, 시설 20, 방재안전 2, 방송통신 3, 행정·사회복지 4, 행정·보건 1, 행정·환경 2
		별정직	소계	3
	7급		1	일반비서 1
	8급		1	일반비서 1
	9급		1	일반비서 1
연구직	소계	1		
	연구사	1	기록연구사 1	
의회사무국	일반직	소계	20	
		4급	1	행정 1
		5급	2	행정 2
		6급	8	행정 4, 속기 2, 운전 1, 행정·사회복지 1
		7급	4	행정 4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8급	4	행정 3, 운전 1
		9급	1	행정 1
보 건 소	일반직	소계	105	
		4급	1	기술 1
		5급	7	의무 2, 행정·보건·의무·간호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3
		6급	22	행정 1, 보건 1, 의료기술 2, 간호 1, 사회복지·간호 1, 보건·간호 1, 식품위생·간호 1, 의료기술·간호 3, 행정·보건·간호 2, 보건·의료기술·간호 7, 식품위생·의료기술·간호 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1
		7급	23	보건 5, 의료기술 4, 간호 8, 운전 1, 보건·간호 1, 식품위생·의료기술 2, 보건·의료기술·간호 2
		8급	44	행정 2, 사회복지 2, 보건 2, 의료기술 1, 간호 29, 운전 1, 행정·간호 1, 보건·간호 1, 식품위생·의료기술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3, 보건·의료기술·간호 1
		9급	8	행정 3, 사회복지 1, 보건 2, 의료기술 2
출 장 소	일반직	계	39	
		5급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6급	11	행정 1, 세무 2, 녹지 1, 시설 2, 운전 1, 사무운영 1, 행정·농업 1, 행정·보건 1, 행정·공업·시설 1
		7급	13	행정 2, 공업 2, 농업 1, 녹지 1, 보건 1, 시설 5, 행정·세무 1
		8급	9	녹지 1, 보건 2, 시설 5, 공업·환경 1
		9급	5	행정 2, 세무 1, 녹지 2
동	일반직	계	305	
		5급	22	행정·녹지 1, 행정·사회복지·공업 2, 행정·사회복지·농업 1, 행정·사회복지·녹지 3, 행정·사회복지·보건 3, 행정·사회복지·환경 2, 행정·사회복지·시설 4, 행정·사회복지·방송통신 1, 행정·공업·농업 2, 행정·녹지·시설 1, 행정·보건·환경 1, 행정·보건·시설 1
		6급	49	행정 11, 운전 1, 행정·세무 3, 행정·사회복지 26, 행정·녹지 1, 행정·보건 2, 행정·환경 2, 행정·방송통신 1, 행정·세무·공업 1, 행정·세무·농업 1
		7급	87	행정 48(행정복지 1), 사회복지 21, 운전 13, 사무운영 3, 행정·사회복지 2
		8급	77	행정 41(행정복지 5), 사회복지 30, 운전 4, 행정·사회복지 1, 행정·농업 1
		9급	70	행정 36(행정복지 3), 사회복지 32, 운전 2

[별표 2]

## 구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 관련)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b>합 계</b>			<b>784</b>	
미래기획단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시설 1(개방형)
		6급	3	시설 2, 행정·시설 1
		7급	3	행정 1, 환경 1, 시설 1
		8급	1	행정·시설 1
		9급	2	시설 2
스마트에코 시티추진단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6급	2	방송통신 1, 환경·시설 1
		7급	3	시설 2, 방송통신 1
기획예산실	일반직	소계	26	
		5급	1	행정 1
		6급	9	행정 6, 세무 1, 방송통신 1, 전화상담운영 1
		7급	10	행정 10
		8급	3	행정 1, 방송통신 1, 전화상담운영 1
감사실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개방형) 1
		6급	4	행정 3, 사회복지 1
		7급	6	행정 4, 시설 2
소통협력 담당관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시설 1(개방형)
		6급	3	행정 3
		7급	5	행정 1, 전산 2, 사회복지 1, 시설 1
		8급	1	행정·전산 1
총무과		계	29	
	정무직	소계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일반직	소계	25	
		2급	1	행정 1
		4급	1	행정 1
		5급	3	행정 1, 운전 1,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 1
		6급	7	행정 7
		7급	5	행정 4, 행정·시설 1
		8급	7	행정 7
		9급	1	행정 1
	별정직	소계	3	
		7급	1	일반비서 1
		8급	1	일반비서 1
		9급	1	일반비서 1
	홍보정책과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 1
6급			2	행정 1, 전산 1
7급			6	행정 2, 전산 4
8급			3	행정 2, 전산 1
9급			1	행정 1
공동체협치과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 1
		6급	4	행정 4
		7급	3	행정 3
		8급	5	행정 5
		9급	1	행정 1
재무과	일반직	소계	21	
		5급	1	행정 1
		6급	6	행정 3, 운전 1, 시설 1, 기계운영 1
		7급	8	행정 5, 시설 2, 운전 1
		8급	5	행정 4, 공업 1
		9급	1	행정 1
세무1과	일반직	소계	29	
		5급	1	행정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6급	10	세무 6, 행정·세무 4
		7급	10	세무 9, 행정·세무 1
		8급	4	행정 1, 세무 3
		9급	4	행정 2, 세무 2
세 무 2 과	일반직	소계	38	
		5급	1	행정 1
		6급	11	세무 8, 행정·세무 3
		7급	9	세무 8, 행정·세무 1
		8급	5	세무 5
		9급	12	세무 11, 행정 1
민 원 봉 사 과	일반직	계	23	
		소계	22	
		5급	1	행정 1
		6급	5	행정 5
		7급	3	행정 3
		8급	8	행정 7, 사무운영 1
	9급	5	행정 5	
	연구직	소계	1	
연구사	1	기록연구사 1		
복 지 정 책 과	일반직	소계	37	
		4급	1	행정·기술 1
		5급	1	행정·사회복지 1
		6급	7	사회복지 4, 행정·사회복지 3
		7급	12	행정 3, 사회복지 8, 행정·사회복지 1
		8급	12	행정 1, 사회복지 9, 행정·사회복지 2
		9급	4	행정 3, 사회복지 1
노 인 복 지 과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사회복지 1
		6급	5	행정 1, 사회복지 2, 행정·사회복지 2
		7급	5	행정 1, 사회복지 3, 행정·사회복지 1
		8급	3	사회복지 3
		9급	1	행정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장애인복지과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사회복지 1
		6급	6	사회복지 4, 행정·사회복지 2
		7급	5	사회복지 5
		8급	3	사회복지 3
		9급	5	사회복지 2, 행정·사회복지 3
교육혁신과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 1
		6급	5	행정 5
		7급	7	행정 6, 사회복지 1
		8급	3	행정 3
		9급	4	행정 4
가정보육과	일반직	소계	26	
		5급	1	행정·사회복지 1
		6급	7	행정 2, 사회복지 5
		7급	7	행정 3, 사회복지 4
		8급	8	행정 3, 사회복지 4, 행정·사회복지 1
		9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아동행복과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 1
		6급	4	행정 1, 사회복지 1, 행정·사회복지 2
		7급	3	행정 2, 보건 1
		8급	5	행정 2, 행정·사회복지 3
		9급	3	행정 2, 행정·사회복지 1
문화관광체육과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 1
		6급	5	행정 5
		7급	5	행정 4, 행정·시설 1
		8급	7	행정 6, 시설 1
클린도시과	일반직	소계	25	
		4급	1	행정·기술 1
		5급	1	행정·환경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6급	5	환경 3, 행정·환경 1, 공업·환경 1
		7급	4	행정 1, 환경 3
		8급	3	환경 3
		9급	11	공업 3, 환경 8
환경 관리과	일반직	소계	21	
		5급	1	행정·환경 1
		6급	3	환경 2, 행정·환경 1
		7급	4	환경 4
		8급	6	행정 1, 환경 5
		9급	7	환경 5, 행정·환경 2
생태하천과	일반직	소계	21	
		5급	1	행정·환경·시설 1
		6급	7	행정 1, 공업 2, 시설 1, 운전 1, 보건·환경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7급	8	행정 1, 공업 1, 환경 2, 시설 4
		8급	2	보건 1, 시설 1
		9급	3	행정 1, 공업 1, 시설 1
안전총괄과	일반직	소계	22	
		5급	1	행정·시설 1
		6급	7	행정 2, 행정·시설 2, 행정·방송통신 1, 시설·방재안전 1, 행정·환경·시설 1
		7급	6	행정 2, 환경 1, 시설 1, 방재안전 1, 방송통신 1
		8급	4	공업 1, 시설 1, 방송통신 2
		9급	4	행정 1, 시설 1, 방재안전 2
자원순환과	일반직	소계	31	
		5급	1	행정·보건·환경 1
		6급	8	행정 3, 공업 1, 행정·환경 2, 환경 1, 행정·보건·환경 1
		7급	9	행정 5, 보건 1, 환경 2, 행정·환경 1
		8급	7	행정 2, 환경 5
		9급	6	행정 4, 환경 2
공원녹지과	일반직	소계	22	
		5급	1	행정·녹지·시설 1
		6급	6	녹지 5, 행정·녹지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7급	7	녹지 7
		8급	5	녹지 5
		9급	3	녹지 3
위 생 과	일반직	소계	22	
		5급	1	행정·보건 1
		6급	7	보건 5, 행정·보건 2
		7급	9	보건 9
		8급	3	보건 2, 공업·보건 1
		9급	2	보건 1, 행정·보건 1
경 제 에 너 지 과	일반직	소계	23	
		4급	1	행정·기술 1
		5급	1	행정·공업·농업 1
		6급	6	행정 3, 공업 1, 농업 1, 수의 1
		7급	11	행정 4, 공업 3, 농업 1, 수의 1, 해양수산 1, 농업·수의 1
		8급	3	행정 1, 농업 1, 시설 1
		9급	1	농업 1
기 업 지 원 일 자 리 과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공업 1
		6급	7	행정 3, 공업 2, 행정·공업 1, 행정·공업·시설 1
		7급	6	행정 3, 공업 1, 시설 1, 기계운영 1
		8급	2	행정 1, 공업 1
		9급	4	행정 2, 공업 2
교 통 정 책 과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공업·시설 1
		6급	5	행정 3, 시설 1, 행정·공업 1
		7급	4	행정 3, 공업 1
		8급	5	행정 3, 공업 1, 시설 1
		9급	2	행정 2
주 차 관 리 과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시설 1
		6급	5	행정 3, 세무 1, 시설 1
		7급	3	행정 1, 시설 1, 사무운영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8급	4	행정 4
		9급	1	행정 1
차 량 민 원 과	일반직	소계	22	
		5급	1	행정 · 공업 1
		6급	4	행정 2, 행정 · 세무 2
		7급	6	행정 4, 세무 1, 공업 1
		8급	8	행정 7, 세무 1
		9급	3	행정 2, 공업 1
도 시 기 반 과	일반직	소계	26	
		4급	1	기술 1
		5급	1	행정 · 시설 1
		6급	7	행정 2, 공업 2, 시설 2, 행정 · 시설 1
		7급	6	행정 2, 공업 1, 시설 3
		8급	10	행정 1, 공업 1, 시설 6, 기계운영 1, 행정 · 시설 1
		9급	1	공업 1
건 축 과	일반직	소계	25	
		5급	1	행정 · 시설 1
		6급	4	행정 1, 시설 3
		7급	4	시설 4
		8급	8	행정 1, 공업 2, 시설 5
		9급	8	행정 1, 시설 7
주 택 과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 · 시설 1
		6급	4	시설 2, 행정 · 사회복지 1, 행정 · 시설 1
		7급	5	사회복지 1, 시설 4
		8급	3	시설 2, 행정 · 시설 1
		9급	3	사회복지 1, 시설 2
도 시 개 발 과	일반직	소계	25	
		5급	1	행정 · 시설 1
		6급	6	행정 1, 시설 2, 행정 · 시설 2, 녹지 · 시설 1
		7급	11	행정 3, 시설 8
		8급	5	행정 2, 시설 3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9급	2	시설 2
도 시 재 생 경 관 과	일반직	소계	21	
		5급	1	행정·시설 1
		6급	7	행정 2, 시설 1, 사무운영 1, 행정·시설 3
		7급	6	행정 1, 시설 5
		8급	3	행정 2, 시설 1
		9급	4	행정 1, 시설 3
토 지 정 보 과	일반직	소계	25	
		5급	1	행정·시설 1
		6급	5	시설 4, 행정·시설 1
		7급	13	행정 1, 시설 11, 행정·시설 1
		8급	5	행정 3, 시설 2
		9급	1	시설 1

[별표 4]

### 보건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 관련)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b>합 계</b>			<b>105</b>	
보건 행정 과	일반직	계	25	
		4급	1	기술 1
		5급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6급	4	의료기술 2, 행정·보건·간호 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1
		7급	8	보건 3, 의료기술 2, 간호 2, 운전 1
		8급	10	행정 2, 보건 2, <b>간호 2</b> , 운전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2, 보건·의료기술·간호 1
		9급	1	행정 1
건강 증진 과	일반직	계	14	
		5급	2	의무 1, 행정·보건·의무·간호 1
		6급	4	간호 1, 식품위생·간호 1, 의료기술·간호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7급	3	보건 1, 보건·간호 1, 식품위생·의료기술 1
		8급	5	간호 3, 행정·간호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1
지역 보건 과	일반직	계	17	
		5급	2	의무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6급	4	보건 1, 보건·간호 1, 행정·보건·간호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7급	2	의료기술 1, 간호 1
		8급	8	<b>간호 7</b> , 보건·간호 1
		9급	1	사회복지 1
치매 돌봄 과	일반직	계	32	
		5급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6급	4	사회복지·간호 1, 의료기술·간호 2, 보건·의료기술·간호 1
		7급	4	<b>간호 4</b>
		8급	18	사회복지 2, <b>간호 16</b>
		9급	5	행정 2, <b>보건 1</b> , <b>의료기술 2</b>

건강생활 지원과	일반직	계	17	
		5급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6급	6	행정 1, 보건·의료기술·간호 4, 식품위생·의료기술·간호 1
		7급	6	보건 1, 의료기술 1, 간호 1, 식품위생·의료기술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8급	3	의료기술 1, 간호 1, 식품위생·의료기술 1
	9급	1	보건 1	

[별표 6]

###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 관련)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b>합 계</b>			<b>305</b>	
검 암 경 서 동	일반직	<b>소계</b>	<b>22</b>	
		5급	1	행정 · 공업 · 농업 1
		6급	3	행정 1, 행정 · 사회복지 2
		7급	7	행정 3, 사회복지 3, 운전 1
		8급	7	행정 5, 사회복지 2
		9급	4	행정 2(행정복지 1), 사회복지 2
연 회 동	일반직	<b>소계</b>	<b>22</b>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보건 1
		6급	3	행정 · 세무 1, 행정 · 사회복지 2
		7급	7	행정 3, 사회복지 3, 운전 1
		8급	4	행정 3, 사회복지 1
		9급	7	행정 3, 사회복지 4
청 라 1 동	일반직	<b>소계</b>	<b>13</b>	
		5급	1	행정 · 보건 · 환경 1
		6급	2	행정 · 세무 1, 행정 · 사회복지 1
		7급	5	행정 3(행정복지 1), 사회복지 1, 운전 1
		8급	3	행정 3
		9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청 라 2 동	일반직	<b>소계</b>	<b>15</b>	
		5급	1	행정 · 녹지 · 시설 1
		6급	2	행정 · 사회복지 1, 행정 · 환경 1
		7급	2	행정 2
		8급	6	행정 4, 사회복지 1, 운전 1
		9급	4	행정 2, 사회복지 2
청 라 3 동	일반직	<b>소계</b>	<b>12</b>	
		5급	1	행정 · 녹지 1
		6급	2	행정 1, 행정 · 사회복지 1
		7급	3	행정 2, 사무운영 1

구 분	직 중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8급	3	행정 2(행정복지 1), 사회복지 1
		9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가 정 1 동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시설 1
		6급	2	행정 · 사회복지 1, 행정 · 보건 1
		7급	4	행정 3, 사회복지 1
		8급	2	행정 1, 운전 1
		9급	3	행정 1(행정복지 1), 사회복지 2
가 정 2 동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시설 1
		6급	2	행정 · 방송통신 1, 행정 · 사회복지 1
		7급	1	행정 1
		8급	4	행정 1(행정복지 1), 사회복지 1, 운전 1, 행정 · 사회복지 1
		9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가 정 3 동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녹지 1
		6급	2	행정 1, 행정 · 사회복지 1
		7급	1	행정 1
		8급	3	행정 2(행정복지 1), 사회복지 1
		9급	3	행정 1, 사회복지 1, 운전 1
신 현 원 창 동	일반직	소계	19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공업 1
		6급	3	행정 1, 행정 · 사회복지 2
		7급	6	행정 2, 사회복지 3, 운전 1
		8급	4	행정 2, 사회복지 2
		9급	5	행정 2, 사회복지 3
석 남 1 동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환경 1
		6급	2	행정 1, 행정 · 사회복지 1
		7급	5	행정 2, 사회복지 1, 운전 1, 행정 · 사회복지 1
		8급	2	행정 2

구 분	직 중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9급	3	행정 1, 사회복지 2
석 남 2 동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사회복지·보건 1
		6급	2	행정·환경 1, 행정·사회복지 1
		7급	3	행정 2, 운전 1
		8급	4	행정 1, 사회복지 3
		9급	1	행정 1
석 남 3 동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6급	2	행정·녹지 1, 행정·사회복지 1
		7급	4	행정 2, 사회복지 1, 운전 1
		8급	3	행정 1, 사회복지 2
		9급	1	행정 1(행정복지)
가 좌 1 동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사회복지·녹지 1
		6급	2	행정·세무·공업 1, 행정·사회복지 1
		7급	2	행정 1, 운전 1
		8급	4	행정 2, 사회복지 2
		9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가 좌 2 동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사회복지·방송통신 1
		6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7급	5	행정 3, 사회복지 1, 사무운영 1
		8급	4	행정 2(행정복지 1), 사회복지 2
		9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가 좌 3 동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사회복지·공업 1
		6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7급	3	행정 2, 운전 1
		8급	3	행정 1, 사회복지 2
		9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구 분	직 중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가 좌 4 동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환경 1
		6급	2	행정 1, 행정 · 사회복지 1
		7급	4	행정 3, 운전 1
		8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9급	3	행정 1, 사회복지 2
검 단 동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농업 1
		6급	3	행정 · 사회복지 2, 행정 · 세무 · 농업 1
		7급	8	행정 2, 사회복지 3, 운전 1, 사무운영 1, 행정 · 사회복지 1
		8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9급	5	행정 2, 사회복지 3
불로대곡동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시설 1
		6급	3	행정 1, 운전 1, 행정 · 사회복지 1
		7급	5	행정 3, 사회복지 2
		8급	4	행정 1(행정복지 1), 사회복지 2, 행정 · 농업 1
		9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원 당 동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 · 보건 · 시설 1
		6급	2	행정 1, 행정 · 사회복지 1
		7급	3	행정 2, 운전 1
		8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9급	4	행정 1, 사회복지 3
당 하 동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보건 1
		6급	2	행정 · 세무 1, 행정 · 사회복지 1
		7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8급	4	행정 2, 사회복지 1, 운전 1
		9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오류왕길동	일반직	소계	13	

구 분	직 중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5급	1	행정·공업·농업 1
		6급	2	행정·보건 1, 행정·사회복지 1
		7급	4	행정 2, 사회복지 1, 운전 1
		8급	3	행정 1, 사회복지 2
		9급	3	행정 3
마 전 동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사회복지·녹지 1
		6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7급	2	행정 2
		8급	3	행정 1, 사회복지 2
		9급	3	행정 2, 운전 1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128호

##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개발과, ☎ 032-560-577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7. 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 2. 위치

- 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50-2번지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구 원당동 · 당하동 일원	948,480.9	-	948,480.9	인고 제1999-18호 (1999. 02. 23)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있음)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48,480.9	-	948,480.9	100.0	
주거지역	859,759.8	-	859,759.8	90.0	
제1종일반주거지역	286,607.6	-	286,607.6	3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89,904.7	-	189,904.7	20.0	
제3종일반주거지역	383,247.5	-	383,247.5	40.0	
일반상업지역	88,721.1	-	88,721.1	10.0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있음)

가) 교통시설 (변경없음)

① 도로 결정조서

구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광로	3	23	40	주간선 도로	1,030 (총 9,095)	동측 지구계	광로 3-25	일반 도로		'98.6.12	
소계	3	1개노선		-	1,030	-	-	-			
중로	1	116	20	집산도로	228 (총 1,366)	광로 3-24	중로 1-120	일반 도로		'98.6.12	
중로	1	120	20	보조간선 도로	1,330 (총 4,290)	대로 2-61	대로 3-58	일반 도로		'98.6.12	버스 베이 설치
중로	1	127	20	집산도로	488	광로 3-23	중로 1-120	일반 도로		'99.6.23	
중로	1	128	20	집산도로	499	광로 3-23	중로 1-120	일반 도로		'99.6.23	
소계	1	4개노선		-	2,545	-	-	-			

구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중로	2	173	17	집산도로	462	중로 1-120	중로 1-127	일반 도로		1996.23	
중로	2	174	17	집산도로	545	중로 1-120	중로 1-128	일반 도로		1996.23	
소계	2	2개노선		-	1,007	-	-	-			
중로	3	107	12	집산도로	779	광로3-23	중로1-120	일반 도로		1996.23	
중로	3	108	12	집산도로	322	중로 3-107	소로 3-38	일반 도로		1996.23	
중로	3	111	12	집산도로	483	광로 3-23	중로2-174	일반 도로		1996.23	
중로	3	112	12	집산도로	191	중로 1-120	소로 2-41	일반 도로		1996.23	
소계	3	4개노선		-	1,775	-	-	-			
소로	1	1	10	국지도로	604	중로 1-116	중로 1-120	일반 도로		1996.23	
소로	1	2	10	국지도로	421	중로 1-127	중로 1-127	일반 도로		1996.23	
소로	1	3	10	국지도로	313	광로 3-23	중로 1-127	일반 도로		1996.23	
소로	1	4	10	국지도로	357	중로 3-107	중로 3-108	일반 도로		1018.30	
소로	1	5	10	국지도로	143	소로 1-4	소로 1-6	일반 도로		1018.30	
소로	1	6	10	국지도로	116	중로 3-107	소로 1-4	일반 도로		1018.30	
소로	1	7	10	국지도로	105	중로 1-120	중로 3-107	일반 도로		1018.30	
소로	1	8	10	국지도로	132	중로 3-108	소로 1-6	일반 도로		1018.30	
소로	1	9	10	국지도로	89	소로 1-8	소로 1-4	일반 도로		1018.30	
소로	1	10	10	국지도로	113	중로 3-108	소로 1-4	일반 도로		1018.30	
소로	1	11	10	국지도로	417	중로 1-128	중로 1-128	일반 도로		1996.23	
소로	1	12	10	국지도로	55	중로 1-128	소로 1-11	일반 도로		1996.23	
소로	1	12개노선			2,865	-	-				
소로	2	1	8	국지도로	158	중로 1-120	소로 1-1	일반 도로		1996.23	
소로	2	2	8	국지도로	353	소로 1-1	소로 2-1	일반 도로		1996.23	
소로	2	3	8	국지도로	27	중로1-120	소로3-4	일반 도로		1996.23	
소로	2	4	8	국지도로	58	소로 1-1	- (원당동 656-21)	일반 도로		1996.23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로	2	5	8	국지도로	37	소로 2-1	소로 3-8	일반도로		1996.23	
소로	2	6	8	국지도로	49	소로 2-1	소로 3-9	일반도로		1996.23	
소로	2	7	8	국지도로	225	중로 2-173	- (원당동 790)	일반도로		1996.23	
소로	2	8	8	국지도로	93	소로 2-7	소로 1-3	일반도로		1996.23	
소로	2	9	8	국지도로	92	소로 2-7	소로 1-3	일반도로		1996.23	
소로	2	10	8	국지도로	93	소로 2-7	소로 1-3	일반도로		1996.23	
소로	2	11	8	국지도로	102	소로 2-7	소로 1-3	일반도로		1996.23	
소로	2	12	8	국지도로	100	소로 2-11	소로 1-3	일반도로		1996.23	
소로	2	13	8	국지도로	289	소로 1-4	소로 1-3	일반도로		1996.23	
소로	2	14	8	국지도로	74	소로 2-13	소로 1-3	일반도로		1996.23	
소로	2	15	8	국지도로	41	소로 1-3	소로2-17	일반도로		1996.23	
소로	2	16	8	국지도로	120	소로 2-17	소로 2-17	일반도로		1996.23	
소로	2	17	8	국지도로	315	소로 1-3	소로2-17	일반도로		1996.23	
소로	2	18	8	국지도로	609	소로 2-18	소로 2-18	일반도로		1996.23	
소로	2	19	8	국지도로	23	중로 1-120	소로 2-18	일반도로		1996.23	
소로	2	20	8	국지도로	35	중로 3-107	소로 2-18	일반도로		1996.23	
소로	2	21	8	국지도로	14	중로 3-107	동측 지구계	일반도로		1996.23	
소로	2	22	8	국지도로	190	중로 3-107	소로 1-8	일반도로		1996.23	
소로	2	23	8	국지도로	56	중로 3-107	소로 2-22	일반도로		1996.23	
소로	2	24	8	국지도로	49	소로 2-22	소로 3-32	일반도로		1996.23	
소로	2	25	8	국지도로	118	소로 1-4	소로 1-6	일반도로		1996.23	
소로	2	26	8	국지도로	82	소로 1-8	소로 1-4	일반도로		1996.23	
소로	2	27	8	국지도로	328	소로 1-8	소로 2-27	일반도로		1996.23	
소로	2	28	8	국지도로	55	소로 2-27	소로 2-27	일반도로		1996.23	
소로	2	29	8	국지도로	37	중로 3-107	소로 2-27	일반도로		1996.23	

구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로	2	30	8	국지도로	8	중로 3-107	- (원당동 778-11)	일반 도로		1996.23	
소로	2	31	8	국지도로	24	중로 3-107	- (원당동 778)	일반 도로		1996.23	
소로	2	32	8	국지도로	9	중로 3-107	- (원당동 561)	일반 도로		1996.23	
소로	2	33	8	국지도로	216	중로 3-107	소로 2-33	일반 도로		1996.23	
소로	2	34	8	국지도로	41	중로 3-111	소로 2-35	일반 도로		1996.23	
소로	2	35	8	국지도로	331	중로 3-111	소로 2-35	일반 도로		1996.23	
소로	2	36	8	국지도로	368	중로 3-111	중로 3-111	일반 도로		1996.23	
소로	2	37	8	국지도로	85	소로 2-38	소로 2-36	일반 도로		1996.23	
소로	2	38	8	국지도로	103	소로 2-36	소로 2-36	일반 도로		1996.23	
소로	2	39	8	국지도로	179	광로 3-23	소로 2-40	일반 도로		1996.23	
소로	2	40	8	국지도로	134	중로 1-120	소로 2-39	일반 도로		1996.23	
소로	2	41	8	국지도로	291	소로 2-47	- (당하동 984-2)	일반 도로		1996.23	
소로	2	42	8	국지도로	195	중로 3-112	소로 2-48	일반 도로		1996.23	
소로	2	43	8	국지도로	26	소로 2-42	남측 지구계	일반 도로		1996.23	
소로	2	44	8	국지도로	90	소로 2-45	소로 2-41	일반 도로		1996.23	
소로	2	45	8	국지도로	204	소로 2-41	- (당하동 325)	일반 도로		1996.23	
소로	2	46	8	국지도로	161	소로 2-41	소로 2-47	일반 도로		1996.23	
소로	2	47	8	국지도로	174	소로 2-45	소로 2-48	일반 도로		1996.23	
소로	2	48	8	국지도로	463	소로 2-41	소로 2-47	일반 도로		1996.23	
소계	2	48개 노선		-	6,924	-	-	-			
소로	3	1	6	국지도로	147	소로 2-1	소로 2-2	일반 도로		1996.23	
소로	3	2	6	국지도로	37	소로 1-1	소로 3-1	일반 도로		1996.23	
소로	3	3	6	국지도로	99	소로 2-2	소로 3-4	일반 도로		1996.23	
소로	3	4	6	국지도로	268	소로 2-2	소로 2-2	일반 도로		1996.23	
소로	3	5	4	국지도로	72	소로 2-2	소로 3-4	일반 도로		1996.23	

구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로	3	6	6	국지도로	46	소로 1-1	소로 2-2	일반 도로		1996.23	
소로	3	7	3	특수도로	13	중로 1-116	소로 2-4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소로	3	8	3	특수도로	11	중로 1-116	소로 2-5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소로	3	9	3	특수도로	16	중로 1-116	소로 2-6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소로	3	10	3	특수도로	368	소로 1-1	소로 2-4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소로	3	11	3	특수도로	15	소로 1-1	소로 3-10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소로	3	12	3	특수도로	18	중로 1-1	소로 3-10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소로	3	13	3	특수도로	29	중로 1-120	소로 3-3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소로	3	14	3	특수도로	40	중로 1-120	소로 3-4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소로	3	15	3	특수도로	153	소로 1-1	소로 1-1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소로	3	16	3	특수도로	216	소로 1-1	중로 2-173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소로	3	17	3	특수도로	303	소로 2-7	소로 3-16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소로	3	18	3	특수도로	36	소로 2-13	소로2-13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소로	3	19	3	특수도로	30	광로 3-23	소로 2-14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소로	3	20	3	특수도로	10	광로 3-23	소로 2-17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소로	3	21	3	특수도로	7	광로 3-23	소로 2-17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소로	3	22	3	특수도로	155	중로 1-127	중로 2-173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소로	3	23	4	특수도로	35	광로 3-23	소로 1-2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소로	3	24	4	특수도로	32	광로 3-23	소로 1-2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소로	3	25	4	특수도로	35	광로 3-23	소로 1-2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소로	3	26	2	특수도로	295	소로 2-21	북측 지구계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소로	3	27	3	특수도로	40	소로 2-18	소로 2-18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소로	3	28	3	특수도로	36	소로 3-27	소로 3-26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소로	3	29	3	특수도로	23	중로 1-120	소로 2-18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소로	3	30	3	특수도로	20	중로 1-120	소로 2-22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구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 과 지	최 초 결 정 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호	폭 원 (m)								
소로	3	31	3	특수도로	20	중로 1-120	소로 2-22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소로	3	32	3	특수도로	16	중로 3-107	소로 2-24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소로	3	33	3	특수도로	26	중로 3-107	소로 1-5	보행자 전용도로		1018.30	
소로	3	34	3	특수도로	33	소로 1-5	소로 2-25	보행자 전용도로		1018.30	
소로	3	35	3	특수도로	26	중로 3-107	소로 1-8	보행자 전용도로		1018.30	
소로	3	36	3	특수도로	43	중로 3-107	소로 2-27	보행자 전용도로		1018.30	
소로	3	37	3	특수도로	23	중로 1-120	소로 2-27	보행자 전용도로		1018.30	
소로	3	38	3	특수도로	580	중로 3-107	중로 3-108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소로	3	39	6	특수도로	30	중로 3-107	- (월당동 566)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소로	3	40	6	특수도로	15	중로 1-120	- (월당동 568-6)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소로	3	41	3	특수도로	10	광로 3-23	- (월당동 565)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소로	3	42	3	특수도로	10	광로 3-23	- (월당동 562)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소로	3	43	3	특수도로	32	광로 3-23	소로 2-33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소로	3	44	3	특수도로	10	광로 3-23	소로 2-35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소로	3	45	3	특수도로	10	광로 3-23	- (당하동 13-2)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소로	3	46	4	특수도로	201	중로 1-128	중로 3-111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소로	3	47	3	특수도로	229	소로 2-35	소로 2-36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소로	3	48	3	특수도로	18	소로 2-36	소로 3-47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소로	3	49	4	특수도로	32	광로 3-23	소로 1-11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소로	3	50	4	특수도로	32	광로 3-23	소로 1-11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소로	3	51	4	특수도로	35	광로 3-23	소로 1-11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소로	3	52	4	특수도로	229	중로 1-128	중로 2-174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소로	3	53	3	특수도로	23	중로 1-120	소로 2-39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소로	3	54	3	특수도로	170	소로 2-40	소로 2-41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소로	3	55	3	특수도로	57	중로 3-112	소로 2-42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소로	3	56	3	특수도로	33	소로 2-48	소로 2-46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소로	3	57	3	특수도로	34	소로 2-48	소로 2-47	보행자 전용도로		1996.23	

구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 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로	3	58	4	특수도로	55	중로 1-127	소로 1-2	보행자 전용도로		99.6.23	
소계	3	58개노선		-	4,637	-	-	-			

주) ( )는 노선전체에 대한 사항임

② 주차장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	4,229.2	-	4,229.2	-	
기정	2	주차장	원당동 825-8	1,409.1	-	1,409.1	99.06.23.	
기정	3	주차장	당하동 1029-1	1,411.3	-	1,411.3	99.06.23.	
기정	4	주차장	당하동 1030-6	1,408.2	-	1,408.2	99.06.23.	

나) 공간시설 (변경없음)

①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 설 의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	-	-	-	44,932.5	-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원당동 811-2	18,321.3	99.6.23.	
기정	2	공원	근린공원	원당동 824-11	10,226.9	99.6.23.	
기정	3	공원	근린공원	원당동 849	11,114.7	01.8.30.	
기정	4	공원	어린이공원	원당동 805-3	2,949.5	99.6.23.	
기정	5	공원	어린이공원	당하동 1041	2,320.1	00.6.26.	

②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 설 의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	-	-	-	13,933.1	-	
소계	-	-	-	-	9,162.4	-	완충녹지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원당동 811-9	388.2	99.6.23.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원당동 820-2	418.0	99.6.23.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원당동 820-3	1,147.2	99.6.23.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원당동 820-4	106.0	99.6.23.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당하동 1019-1	913.6	99.6.23.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당하동 1027-1	928.5	99.6.23.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당하동 1027-2	838.9	99.6.23.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원당동 854-11	374.8	99.6.23.	
기정	9	녹지	완충녹지	원당동 854-10	801.1	99.6.23.	
기정	10	녹지	완충녹지	원당동 854-9	942.4	99.6.23.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1	녹지	완충녹지	원당동 855-3	170.3	ˆ 99.6.23.	
기정	12	녹지	완충녹지	원당동 858	539.0	ˆ 99.6.23.	
기정	13	녹지	완충녹지	당하동 1033-6	675.4	ˆ 99.6.23.	
기정	14	녹지	완충녹지	당하동 1035	919.0	ˆ 99.6.23.	
소계	-	-	-	-	4,770.7	-	경관녹지
기정	15	녹지	경관녹지	원당동 795-1	114.7	ˆ 99.6.23.	
기정	16	녹지	경관녹지	원당동 801	1,196.9	ˆ 99.6.23.	
기정	17	녹지	경관녹지	원당동 840-6	986.6	ˆ 99.6.23.	
기정	18	녹지	경관녹지	원당동 854-13	298.1	ˆ 99.6.23.	
기정	19	녹지	경관녹지	원당동 854-6	107.7	ˆ 99.6.23.	
기정	20	녹지	경관녹지	당하동 1036-2	207.1	ˆ 00.6.26.	
기정	21	녹지	경관녹지	원당동 887-2	479.7	ˆ 10.10.4.	
기정	22	녹지	경관녹지	원당동 887-1	98.2	ˆ 10.10.4.	
기정	23	녹지	경관녹지	원당동 853-5	523.0	ˆ 10.10.4.	
기정	24	녹지	경관녹지	원당동 857-1	111.3	ˆ 10.10.4.	
기정	25	녹지	경관녹지	당하동 1037-5	59.2	ˆ 10.10.4.	
기정	26	녹지	경관녹지	당하동 1037-6	143.0	ˆ 10.10.4.	
기정	27	녹지	경관녹지	당하동 1061-1	142.0	ˆ 10.10.4.	
기정	28	녹지	경관녹지	원당동 810-14	303.2	ˆ 10.10.4.	

### ③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	-	-	1,436.9	-	
기정	1	공공공지	원당동 873	884.7	ˆ 10.10.4.	
기정	2	공공공지	원당동 836-4	379.1	ˆ 10.10.4.	
기정	3	공공공지	원당동 849-1	119.8	ˆ 10.10.4.	
기정	4	공공공지	원당동 857-2	53.3	ˆ 10.10.4.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있음)

#### ①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	-	-	-	57,715.8	-	
기정	1	학 교	고등학교	원당동 852-3	12,053.0	ˆ 99.6.23.	
기정	2	학 교	중학교	원당동 852-2	11,419.5	ˆ 99.6.23.	
기정	3	학 교	초등학교	원당동 809	12,215.1	ˆ 99.6.23.	
기정	4	학 교	초등학교	당하동 1022	11,247.3	ˆ 99.6.23.	
기정	5	학 교	초등학교	당하동 1038-1	10,780.9	ˆ 00.6.26.	

②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	-	-	-	5,368.6	-	
기정	1	공공청사	동사무소	원당동 853-1	1,990.1	19.6.23.	
기정	2	공공청사	우체국	원당동 823-2	1,264.9	19.6.23.	
기정	3	공공청사	파출소	원당동 854-1	970.3	19.6.23.	
기정	4	공공청사	소방파출소	원당동 854-2	1,143.3	19.6.23.	

③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	-	1,409.5	증) 861.3	2,270.8	-	
기정	1	체육시설	복합체육관	원당동 825-1	1,409.5	-	1,409.5	19.12.30.	
신설	2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원당동 850-2	-	증) 861.3	861.3	-	

■ 체육시설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2	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시설 신설</li> <li>- 면적 : 861.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원당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고자 함.</li> </ul>

라) 방재시설 (변경없음)

① 하천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하천	하천	원당동 851-4	5,150.3	19.6.23.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결정 (변경있음)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있음)

① 단독주택용지(A-1 용도) (변경없음)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A-1	1-1	615.7	1	387.5	
			2	228.2	
	2	893.4	1	316.4	
			2-1	270.2	
			2-2	306.8	
	3	2,215.2	1	369.2	
			1-2	369.2	
			1-3	369.2	
			1-4	369.2	
			1-5	369.2	
			1-6	369.2	
	4	2,079.9	1-1	440	-
			1-2	465.4	-
			2-1	273.0	-
			2-2	315.0	-
			2-3	586.5	-
	9	5,198.9	1	485.9	-
			2	1,262.8	-
			3-1	298.1	-
			3-2	299.5	-
			3-3	298.2	-
			3-4	299.7	-
			4-1	293.0	-
			4-2	275.0	-
			4-3	337.0	-
			4-4	319.0	-
			4-5	276.1	-
			4-6	275.0	-
			5	479.6	-
	10	4,312.3	1-1	922.8	-
			1-2	664.0	-
			2-1	340.5	-
2-2			340.5	-	
3			381.4	-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4-1	275.7	-
			4-2	310.9	-
			5	677.0	-
			6	399.5	-
	11	2,521.8	1	1,629.3	-
			2	447.8	-
			3	444.7	-
	14	2,138.9	1	605.3	-
			2	306.1	-
			3	347.3	-
			4	291.5	-
			5	182.1	-
			6	406.6	-
	15	3,058.0	1	595.9	-
			2	1,196.9	-
			3	432.3	-
			4-1	277.5	-
			4-2	277.6	-
			4-3	277.8	-
	21	5,282.4	1	389.3	-
			2	389.6	-
			3-1	349.8	-
			3-2	656.6	-
			3-3	570.0	-
			4	612.5	-
			5	566.1	-
			6	335.5	-
			7-1	352.5	-
			7-2	330.8	-
			7-3	330.6	-
22	2,138.6	8	399.1	-	
		1	369.4	-	
		2	470.1	-	
		3	692.8	-	
		4	288.3	-	
23-1	1,271.7	5	318.0	-	
		1	674.6	-	
23-2	1,287.4	2	597.1	-	
		4-1	415.0	-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4-2	397.8	
			4-3	474.6	
	27	5,560.6	1	603.6	-
			2	412.4	-
			3-1	387.8	-
			3-2	379.7	-
			3-3	379.7	-
			3-4-1	324.8	-
			3-4-2	324.7	-
			3-4-3	324.7	-
			3-4-4	334.0	-
			3-4-5	334.0	-
			3-4-6	334.1	-
			4	198.1	-
			5	549.4	-
			6-1	231.2	-
			6-2	442.4	-
	54-1	1,483.3	1-1	317.6	-
			1-2	741.6	-
			1-3	424.1	-
	54-2	1,258.5	3-1	282.0	
			3-2	231.5	
			3-3	231.4	
			3-4	231.5	
			3-5	282.1	
	55	2,327.8	1	579.2	-
			1-2-1	525.4	-
			1-2-2	305.8	-
			1-2-3	305.8	-
			1-2-4	305.8	-
1-2-5			305.8	-	
56	1,854.3	1	303.8		
		2-1	311.6		
		2-2	311.6		
		3-1	308.3		
		3-2	308.9		
		3-3	310.1		
57	1,276.3	1	811.5	-	
		2	464.8	-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58-1	769.9	1	769.9	-
	59	3,508.0	1-1	291.8	
			1-2	291.8	
			2-1	253.3	
			2-2	258.4	
			2-3	297.5	
			2-4	301.6	
			2-5	304.7	
			2-6	300.5	
			2-7	304.6	
			2-8	304.7	
			2-9	301.6	
	2-10	297.5			
	60	3,314.7	1-1-1	247.7	-
			1-1-2	247.7	-
			1-2	495.4	-
			2-1-1	267.1	-
			2-1-2	304.3	-
			2-1-3	300.3	-
			2-1-4	290.2	-
			2-2	389.2	-
			2-2-1	385.3	-
	2-3	387.5	-		
	61	3,426.0	1-1-1	282.0	-
			1-1-2	291.0	-
			1-1-3	287.0	-
			1-1-4	296.0	-
			1-2-1	332.0	-
			1-2-2	321.0	-
			1-2-3	316.0	-
			1-2-4	316.0	-
			1-2-5	320.0	-
			1-2-6	337.0	-
			1-2-7	328.0	-
	62	2,099.8	1-1	561.5	-
			1-2-1	294.5	-
			1-2-2	273.8	-
			2-1-2	299.9	-
			2-2	359.9	-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64	2,860.9	2-3	310.2	-		
			1	2,504.1	-		
	65-1	815.0	2	356.8	-		
			1	815.0	-		
	66	5,102.2	1-1	370.0	-		
			1-2	422.2	-		
			1-3	420.6	-		
			1-4	358.9	-		
			1-5	356.5	-		
			1-6	354.2	-		
			1-7	356.2	-		
			1-8	385.7	-		
			2-1-1	351.7	-		
			2-1-2	344.5	-		
			2-1-3	346.5	-		
			2-1-4	344.2	-		
			2-1-5	344.2	-		
			2-2	346.8	-		
			67	4,750.9	1-1	317.7	
					1-2	317.8	
	1-3	317.8					
	1-4	317.8					
	1-5	317.7					
	1-6	317.8					
	1-7	317.8					
	1-8	317.4					
	2-1	330.6					
	2-2	309.6					
	2-3	309.6					
	2-4	309.5					
	2-5	309.6					
	2-6	309.6					
	2-7	330.6					
	79-2	1,589.6	2-1	359.4	-		
			2-2	509.4	-		
			3	338.7	-		
			4	382.1	-		
	81-1	1,907.0	1-1	467.7	-		
			1-2	347.2	-		
			2-1	298.1	-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2-2	298.1	-
			2-3	495.9	-
	82	1,500.0	1-1	305.6	
			1-2	274.7	
			1-3	338.0	
			1-4	289.9	
			1-5	291.8	
	83	1,082.4	1-1	541.2	-
			1-2	541.2	-
	86	3,574.6	1	802.4	-
			2-1	371.3	-
			2-2	296.5	-
			2-3-1	334.1	-
			2-3-2	334.9	-
			3-1	356.0	-
			3-2	356.8	-
			3-3	362.4	-
	89	1,749.3	1-1	295.4	
			1-2	290.6	
			1-3	290.6	
			1-4	290.7	
			1-5	290.6	
			1-6	291.4	
	90	2,630.4	1	2,630.4	-
	91	4,070.9	1-1	334.6	
			1-2	334.0	
			1-3	332.5	
1-4			331.1		
1-5			329.6		
1-6			367.6		
1-7			387.2		
1-8			328.0		
1-9			328.0		
1-10			328.0		
1-11			328.0		
1-12			342.3		
92	4,263.4	1-1	243.3		
		1-2	312.9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1-3	312.9	
			1-4	312.9	
			1-5	313.1	
			1-6	313.1	
			1-7	313.1	
			1-8	268.0	
			1-9	290.2	
			1-10	340.1	
			1-11	294.1	
			1-12	313.9	
			1-13	314.9	
			1-14	320.9	

② 단독주택용지(A-2 용도) (변경없음)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A-2	5	2,348.8	1	219.5	
			2-1	663.8	
			2-2	562.4	
			3	639.7	
			4	263.4	
	24	2,744.7	1-1	169.9	
			1-2	396.7	
			1-3	383.3	
			2	832.9	-
			3-1	455.4	
			3-2	506.5	-
	63	3,526.9	1-1	1,182.7	-
			2-1	431.6	
			2-2	416.6	
			2-3	338.3	
			3-1	374.3	
			3-2	231.4	
			4-1	261.0	
			4-2	291.0	
	68-1	1,748.2	1	385.9	
			2	423.0	
			3-2	335.7	
			4-1	301.9	
			4-2	301.7	
	77-1	4,438.9	1	292.0	
			2	3,065.8	-
			3-1	401.5	
			3-2	385.6	
			3-2-1	294.0	
	80-2	643.6	10	643.6	-
85-1	881.5	2-1	292.5		
		2-2	309.0		
		2-3	280.0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A-2	87	2,658.8	1-1	346.7	
			1-2	330.5	
			1-3	330.6	
			1-4	346.8	
			2	309.7	
			3	296.3	
			4-1	368.2	
			4-2	330.0	
	103-1	1,794.7	1	660.0	
			2-1	284.5	
			2-2	284.5	
			2-3	284.5	
			2-4	281.2	
	104	1,456.0	1	663.3	-
			2	792.7	-
	105	2,018.6	1	344.9	
			2	302.3	
			3	540.1	-
			4	831.3	-
	107-1	664.8	1	664.8	
	108-2	1,113.7	1	280.4	
			2	833.3	-

③ 단독주택용지(A-3 용도) (변경있음)

[기 정]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A-3	7	3,332.3	1-1	347.0	
			1-2	346.9	
			1-3	330.4	
			1-4	330.3	
			2-1	362.2	
			2-2	346.5	
			2-3	258.6	
			3-1	350.6	
			3-2	659.8	-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A-3	8-1	3,063.0	1	905.3	-	
			2-1	328.3	-	
			2-2	332.4	-	
			3	521.8		
			4	203.0		
			5	772.2	-	
	12	2,888.3	1	660.4	-	
			2	638.7	-	
			3	467.8		
			4-1	330.7		
			4-2	330.7		
			4-3	460.0		
	13	1,296.3	1	158.8		
			2	227.2		
			3	910.3	-	
	16	3,824.4	1-1	283.3	-	
			1-2	256.5	-	
			1-3	256.1	-	
			2-1	296.5	-	
			2-2	296.4	-	
			3	314.1		
			4-1	367.4	-	
			4-2	367.3	-	
			5-1-1	277.3	-	
			5-1-2	277.3	-	
			5-1-3	277.5	-	
			5-2	277.4		
			5-3	277.3		
	17-1	5,298.3	1	1,108.5	-	
			2	239.9		
			3-1	304.2		
			3-2	330.6		
			3-3-1	331.7	-	
			3-3-2	331.6	-	
			4-1	275.5	-	
			4-2	866.5	-	
			5	715.8	-	
	30	1,519.7	6	794.0	-	
			1	589.6	-	
			2-1	304.5		
				2-2	625.6	-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A-3	31	1,116.4	1-1	279.0	
			1-2	279.1	
			1-3	279.1	
			1-4	279.2	
	32	3,141.7	1-1	257.7	
			1-2	257.8	
			1-3	280.0	
			1-4	661.0	-
			1-5	262.0	
			2-1	845.9	-
	33	1,949.7	2-2	577.3	-
			1	1,551.1	-
			2	231.9	
	34	2,243.5	3	166.7	
			1-1	330.5	
			1-2	330.5	
			1-3	330.5	
			1-4	307.0	
			2-1	688.1	
	35-1	1,104.3	2-2	256.9	
			1-1	422.3	-
			1-2	276.8	-
	36-1	1,366.5	2	405.2	
			1-1	244.2	-
			1-2	244.2	-
			1-3	284.3	-
			1-4	330.0	-
	37-1	1,486.2	2	263.8	
			1	336.4	
			2-1	332.6	-
			2-2	314.3	-
	38	2,020.7	3	502.9	-
1-1			336.5		
1-2			336.4		
1-3			495.3	-	
2-1			284.1	-	
2-2			284.2	-	
			2-3	284.2	-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A-3	39	2,210.2	1	193.4	
			2	429.0	
			3	176.8	
			4-1	329.3	-
			4-2	329.3	-
			5-1	376.2	
			5-2	376.2	
	40	3,274.6	1	2,228.7	-
			2-1	550.0	-
			2-2	495.9	-
	42	4,256.5	1	705.4	-
			2	878.4	-
			3	1,017.0	-
			4	779.2	-
			5-1	397.0	
			5-2	285.8	
			6	193.7	
	43	1,626.9	1-1	267.1	
			1-2	234.6	
			1-3	273.9	
			1-4	572.0	-
			1-5	279.3	
	44	2,134.3	1-1	337.1	-
			1-2	337.0	
			2-1	431.8	
			2-2	297.6	
			2-3-1	350.0	-
			2-3-2	380.8	-
	47-1	1,658.7	1-1	256.7	
			1-2	256.4	
			1-3	256.3	
			1-4	256.3	
			2	633.0	-
	49	2,890.8	1-1	567.0	-
			1-2	603.6	-
			1-3	200.0	
2			377.4		
3-1			942.0	-	
3-2			200.8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A-3	50	3,162.7	1	438.1	-
			2	211.1	
			3	368.5	
			4-1	266.5	-
			4-2	266.5	-
			5	386.6	
			6-1	330.6	-
			6-2	302.8	-
			7	353.4	
			8	238.6	
	52	2,769.0	1	1,907.7	-
			2	861.3	-

## [변 경]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A-3	7	3,332.3	1-1	347.0	
			1-2	346.9	
			1-3	330.4	
			1-4	330.3	
			2-1	362.2	
			2-2	346.5	
			2-3	258.6	
			3-1	350.6	
			3-2	659.8	-
			1	905.3	-
	8-1	3,063.0	2-1	328.3	-
			2-2	332.4	-
			3	521.8	
			4	203.0	
			5	772.2	-
	12	2,888.3	1	660.4	-
			2	638.7	-
			3	467.8	
			4-1	330.7	
			4-2	330.7	
4-3			460.0		
13	1,296.3	1	158.8		
		2	227.2		
		3	910.3	-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A-3	16	3,824.4	1-1	283.3	-
			1-2	256.5	-
			1-3	256.1	-
			2-1	296.5	-
			2-2	296.4	-
			3	314.1	
			4-1	367.4	-
			4-2	367.3	-
			5-1-1	277.3	-
			5-1-2	277.3	-
			5-1-3	277.5	-
			5-2	277.4	
			5-3	277.3	
			17-1	5,298.3	1
	2	239.9			
	3-1	304.2			
	3-2	330.6			
	3-3-1	331.7			-
	3-3-2	331.6			-
	4-1	275.5			-
	4-2	866.5			-
	5	715.8			-
	6	794.0			-
	30	1,519.7	1	589.6	-
			2-1	304.5	
			2-2	625.6	-
	31	1,116.4	1-1	279.0	
			1-2	279.1	
			1-3	279.1	
			1-4	279.2	
	32	3,141.7	1-1	257.7	
			1-2	257.8	
			1-3	280.0	
			1-4	661.0	-
			1-5	262.0	
			2-1	845.9	-
			2-2	577.3	-
	33	1,949.7	1	1,551.1	-
			2	231.9	
			3	166.7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A-3	34	2,243.5	1-1	330.5	
			1-2	330.5	
			1-3	330.5	
			1-4	307.0	
			2-1	688.1	
			2-2	256.9	
	35-1	1,104.3	1-1	422.3	-
			1-2	276.8	-
			2	405.2	
	36-1	1,366.5	1-1	244.2	-
			1-2	244.2	-
			1-3	284.3	-
			1-4	330.0	-
			2	263.8	
	37-1	1,486.2	1	336.4	
			2-1	332.6	-
			2-2	314.3	-
			3	502.9	-
	38	2,020.7	1-1	336.5	
			1-2	336.4	
			1-3	495.3	-
			2-1	284.1	-
			2-2	284.2	-
			2-3	284.2	-
	39	2,210.2	1	193.4	
			2	429.0	
			3	176.8	
			4-1	329.3	-
			4-2	329.3	-
			5-1	376.2	
			5-2	376.2	
	40	3,274.6	1	2,228.7	-
			2-1	550.0	-
2-2			495.9	-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A-3	42	4,256.5	1	705.4	-
			2	878.4	-
			3	1,017.0	-
			4	779.2	-
			5-1	397.0	
			5-2	285.8	
			6	193.7	
	43	1,626.9	1-1	267.1	
			1-2	234.6	
			1-3	273.9	
			1-4	572.0	-
			1-5	279.3	
	44	2,134.3	1-1	337.1	-
			1-2	337.0	
			2-1	431.8	
			2-2	297.6	
			2-3-1	350.0	-
	47-1	1,658.7	2-3-2	380.8	-
			1-1	256.7	
			1-2	256.4	
			1-3	256.3	
			1-4	256.3	
	49	2,890.8	2	633.0	-
			1-1	567.0	-
			1-2	603.6	-
			1-3	200.0	
			2	377.4	
			3-1	942.0	-
	50	3,162.7	3-2	200.8	
			1	438.1	-
			2	211.1	
3			368.5		
4-1			266.5	-	
4-2			266.5	-	
5			386.6		
6-1			330.6	-	
6-2			302.8	-	
7			353.4		
52-1	1,907.7	8	238.6		
		1	1,907.7	-	

##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번호 변경 및 획지 제척</li> <li>- 가구번호: 52 → 52-1</li> <li>- 획지: 2번 획지 제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원당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해 가구번호 변경 및 획지 제척</li> </ul>

## ④ 단독주택용지(A-4 용도) (변경없음)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A-4	6	2,107.7	1	406.8	
			2	953.9	-
			3	747.0	-
	25	1,810.2	1	572.5	-
			2	572.5	-
			3	665.2	-
	29	2,625.8	1-1-1	531.3	
			1-1-2	531.3	
			1-2-1	531.2	-
			1-2-2	531.1	-
			2	500.9	
	45	1,830.2	1-1-1-1	279.8	
			1-1-1-2	296.9	
			1-1-1-3	306.0	
			1-1-2	572.3	-
			1-2	375.2	
	46-1	2,448.1	1	248.8	
			2	514.5	-
			3-1	247.4	
			3-2	297.5	
			3-3	200.0	
			4-1	470.0	
			4-2	469.9	
	48-1	987.5	1	987.5	-
	51	3,428.4	1-1	519.4	-
			1-2	519.5	-
			2	764.7	-
			3-1-1	220.4	
3-1-3			213.0		
3-2			326.5		
3-3			546.9		
3-4			318.0		

## ⑤ 다세대/연립주택용지(B-1 용도) (변경없음)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B-1	19	2,499.4	1-1	701.1	
			1-2	718.6	
			1-3	705.7	
			2	374.0	
	20	2,986.3	1-1	807.2	
			1-2	851.9	
			2	1,327.2	
	26	1,919.8	1-1	735.3	
			1-2	703.6	
			2	129.5	
			3	351.4	
	109-2	1,646.9	2-1	338.5	
			2-2	338.7	
			2-3	338.7	
			2-4	366.8	
			3	264.2	
	110	3,682.2	1-1-1	758.0	
			1-1-2	785.5	
			1-2	561.2	
			2-1	350.1	
			2-2	361.3	
			2-3	432.2	
			2-4	433.9	
	111	3,319.4	1	296.9	
			2	272.4	
			3	1,023.6	
			4-1	379.2	
			4-2	349.7	
			4-3	360.7	
			5-1	318.5	
5-2			318.4		
112	1,540.9	1-1	394.5		
		1-2	376.1		
		1-3	376.2		
		1-4	394.1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B-1	114	3,186.1	1	729.6	
			2	688.9	
			3	537.2	
			4	432.7	
			5	797.7	-
	115	2,398.4	1-1-1	406.9	
			1-1-2	515.9	
			2-1	595.3	
			2-2	880.3	
	116	4,696.2	1-1	371.2	
			1-2	382.1	
			1-3	342.8	
			1-4	361.2	
			2-1	479.2	-
			2-2	479.1	-
			3	395.5	
			4-1	337.7	
			4-2	405.5	
			5-1	383.1	
			5-2	374.7	
			5-3	384.1	
			117	3,483.0	1
	2	711.9			-
	3	630.8			-
	4-1	345.6			
	4-2	333.4			
	4-3	346.8			
	4-4	333.9			
	118	3,836.8	1-1	393.0	
			1-2	392.9	
			1-3	392.9	
			2-1	660.6	
			2-2	653.5	
			3-1-1	330.3	
			3-1-2	332.0	
			3-2-1	341.1	
3-2-2			340.5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B-1	119	3,328.3	1	1,769.4	-
			2-1	768.0	
			2-2-1	386.7	
			2-2-2	404.2	
	120	3,038.5	1-1	437.2	
			1-2	732.8	-
			2	630.9	
			3	876.3	
			4	361.3	
	121	2,571.4	1-1	419.2	
			1-2	412.0	
			1-3	640.9	
			1-4	548.1	-
			2-1	287.4	
			2-2	263.8	
	122	1,351.9	1	308.6	
2			375.1		
3			506.2	-	
4			162.0		

⑥ 연립주택용지(C-1 용도) (변경없음)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 적(㎡)	
C-1	53-2	14,717.3	10	8,423.2	
			11	6,294.1	

## ⑦ 아파트용지(D-1 용도) (변경없음)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D-1	53-1	33,749.1	1	520.6	
			2	570.9	
			3	200.2	
			4-1	4,009.6	
			4-2	5,540.6	
			5	3,347.5	
			6	2,725.2	
			7	778.4	
			8	1,157.9	
	9	14,898.2			
	69-1	20,697.3	1	5,891.5	
			2	14,805.8	
	70	28,370.9	1	28,370.9	
	93-1	48.9	3	18,386.6	
			8	562.3	
	94	39,757.4	1	30,135.1	
			2	9,622.3	
	101	43,298.5	1	43,298.5	
	102	35,665.9	1	35,665.9	

## ⑧ 아파트용지(D-2 용도) (변경없음)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D-2	78-1	21,077.2	1	21,077.2	
	80-1	13,267.1	3	13,267.1	
	108-1	18,427.1	3	18,427.1	

## ⑨ 아파트용지(D-2 용도) (변경없음)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D-2	46-2	320.0	6	320.0	

## ⑩ 상업용지(E-1 용도) (변경없음)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E-1	72-1	4,692.8	2	418.9	
			3	582.0	
			4	1,345.7	-
			5-1	605.6	
			5-2	605.5	
			5-3	605.5	
			6	529.6	
	74-1	4,599.4	1	385.8	
			2	972.1	
			3	941.9	
			6	504.1	
			7	787.1	
			8	1,008.4	-
	97-1	6,922.7	2	412.9	
			3	412.8	
			4	443.7	
			5-1	728.6	
			5-2	1,463.4	-
			6	761.4	
			7	818.0	
			8	1,315.0	
			10	566.9	
	99-1	6,254.5	1	659.4	
			2	460.5	
			3-1	771.5	
			4-1	622.7	
			4-2	612.7	
			7	938.6	-
			8	1,635.1	-
			9	554.0	

## ① 상업용지(E-2 용도) (변경없음)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E-2	71	3,547.9	1	1,825.1	-
			2	1,180.9	
			3	541.9	
	73	3,415.8	1	528.0	
			2	1,891.5	
			3	996.3	
	75	3,988.0	1	533.2	
			2-1	1,051.8	
			2-2	1,051.6	
			3	1,351.4	
	95	3,497.9	1	768.3	
			2	805.4	
			3	1,541.3	
			4	382.9	
	96	4,894.0	1	968.1	
			2	526.2	
			3	838.8	
			4	836.2	
			5	850.6	
			6	874.1	
	98	4,510.0	1	554.1	
			2	942.0	
			3	524.2	
			4	864.6	
			5	858.8	
			6	766.3	
	100	3,445.4	1	938.0	
2			705.4		
3			400.6		
4			651.5		
5			749.9		

## ⑫ 학교용지(F-1 용도) (변경없음)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F-1	28	12,215.1	1	12,215.1	초 교
	78-2	11,419.5	2	11,419.5	중 교
	78-3	12,053.0	3	12,053.0	고 교
	88	11,247.3	1	11,247.3	초 교
	109-1	10,780.9	1	10,780.9	초 교

## ⑬ 공공청사용지(G-1 용도) (변경없음)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G-1	69-2	1,264.9	3	1,264.9	우체국
	79-1	1,990.1	1	1,990.1	동사무소
	80-3	970.3	1	970.3	경찰서
	80-4	1,143.3	2	1,143.3	소방서

## ⑭ 주차장용지(H-1 용도) (변경없음)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H-1	74-2	1,409.1	5	1,409.1	
	97-2	1,411.3	1	1,411.3	
	99-2	1,408.2	6	1,408.2	

## ⑮ 체육시설용지(I-1 용도) (변경없음)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I-1	72-2	1,409.5	1	1,409.5	

## 16) 체육시설용지(I-2 용도) (신설)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	-	-	-	-	-	I-2	52-2	861.3	2	861.3	

## ■ 결정(변경) 사유서

결정 내용	결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육시설용지 신설</li> <li>- 가구번호: 52-2</li> <li>- 획지면적: 861.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원당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해 체육시설용지 신설</li> </ul>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있음)

## ① 단독주택용지(A-1)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1	1-1, 2, 3, 4, 9, 10, 11, 14, 15, 21, 22, 23-1, 23-2, 27, 54-1, 54-2, 55, 56, 57, 58-1, 59, 60, 61, 62, 64, 65-1, 66, 67, 79-2, 81-1, 82, 83, 86, 89, 90, 91, 92BL	용도	허용용도	○별표1 A-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1 A-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륜	○150% 이하	
		높 이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배 치	○별표2의 A	
		형 태	○별표3의 A	
		색 채	○별표4의 A	
		건축한계선	○중로이상 도로에 건축한계선 1m 지정	

## ② 단독주택용지(A-2)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2	5, 24, 63, 68-1, 77-1, 80-2, 85-1, 87, 103-1, 104,105,107-1, 108-2BL	용도	허용용도	○ 별표1 A-2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 A-2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8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배 치	○ 별표2의 A	
		형 태	○ 별표3의 A	
		색 채	○ 별표4의 A	
		건축한계선	○ 중로이상 도로에 건축한계선 1m 지정	

③ 단독주택용지(A-3) (변경있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A-3	7, 8-1, 12, 13, 16, 17-1, 30, 31, 32, 33, 34, 35-1, 36-1, 37-1, 38, 39, 40, 42, 43, 44, 47-1, 49, 50, 52 BL	7, 8-1, 12, 13, 16, 17-1, 30, 31, 32, 33, 34, 35-1, 36-1, 37-1, 38, 39, 40, 42, 43, 44, 47-1, 49, 50, 52-1 BL	용도	허용용도	○별표1의 A-3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A-3의 불허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100%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별표2의 A	
			형 태	○별표3의 A	
			색 채	○별표4의 A	
			건 축 한 계 선	○중로이상 도로에 건축한계선 1m 지정	

■ 변경 사유서

결정 내용	결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독주택용지 가구번호 변경 - 가구번호: 52 → 52-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르신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원당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해 단독주택용지(A-3) 가구번호 변경</li> </ul>

4) 단독주택용지(A-4)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4	6, 25, 29, 45, 46-1, 48-1, 51 BL	용도	허용용도	○별표1의 A-4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A-4의 불허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120%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별표2의 A	
		형 태	○별표3의 A	
		색 채	○별표4의 A	
		건 축 한 계 선	○중로이상 도로에 건축한계선 1m 지정	

## ⑤ 공동주택용지(B-1: 다세대/연립)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B-1	19, 20, 26, 109-2, 110, 111, 112,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BL	용도	허용용도	○별표1 B-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1 B-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배 치	○별표2의 B	
		형 태	○별표3의 B	
		색 채	○별표4의 B	
		건축한계선	○중로이상 도로에 건축한계선 1m 지정	

주) B-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

## ⑥ 공동주택용지(C-1: 연립)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C-1	53-2 BL	용도	허용용도	○별표1 C-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1 C-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2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배 치	○별표2의 C	
		형 태	○별표3의 C	
		색 채	○별표4의 C	
건축한계선	○17m이상 도로변에 건축한계선 1m 지정			

## ⑦ 공동주택용지(D-1: 아파트)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1	53-1, 69-1, 70, 93-1, 94, 101, 102BL	용도	허용용도	○ 별표1의 D-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D-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30%이하	
		용 적 륜	○ 250%이하	
		높 이	○ 20층 이하	
		배 치	○ 별표2의 D	
		형 태	○ 별표3의 D	
		색 채	○ 별표4의 D	
		건 축 한 계 선	○ 12~17m 도로변: 건축한계선 1.0m ○ 20m 도로변: 건축한계선 1.5m	

## ⑧ 공동주택용지(D-2: 아파트)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2	78-1, 80-1, 108-1 BL	용도	허용용도	○ 별표1의 D-2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D-2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30%이하	
		용 적 륜	○ 250%이하	
		높 이	○ 15층 이하	
		배 치	○ 별표2의 D	
		형 태	○ 별표3의 D	
		색 채	○ 별표4의 D	
건 축 한 계 선	○ 12~17m 도로변: 건축한계선 1.0m ○ 20m 도로변: 건축한계선 1.5m 단, 주된 개구부 있는 경우 15m 후퇴지정			

## ⑨ 공동주택용지(D-3: 아파트-KAL아파트)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3	46-2BL	용도	허용용도	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
			불허용도	
		건 폐 율		
		용 적 륜		
		높 이		
		배 치		
		형 태		
		색 채		
		건 축 한 계 선		

## ⑩ 상업용지(E-1)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E-1	72-1, 74-1, 97-1, 99-1BL	용도	허용용도	○ 별표1의 E-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E-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70%이하	
		용 적 륜	○ 330%이하	
		높 이	○ 3~5층(주유소 및 액화가스 충전소는 예외)	
		배 치	○ 별표2의 E	
		형 태	○ 별표3의 E	
		색 채	○ 별표4의 E	
		건 축 한 계 선	○ 10m 도로변: 건축한계선 1.0m ○ 20m 도로변: 건축한계선 1.5m	
		벽 면 지 정 선	○ 상업지역 보행자도로변: 1.0m	

## ⑪ 상업용지(E-2)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E-2	71, 73, 75, 95, 96, 98, 100BL	용도	허용용도	○ 별표1의 E-2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E-2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70%이하	
		용 적 륜	○ 55%이하	
		높 이	○ 5~8층(주유소 및 액화가스 충전소는 예외)	
		배 치	○ 별표2의 E	
		형 태	○ 별표3의 E	
		색 채	○ 별표4의 E	
		건 축 한 계 선	○ 10m 도로변: 건축한계선 1.0m ○ 20m 도로변: 건축한계선 1.5m ○ 40m 도로변: 건축한계선 3.0m	
		벽면지정선	○ 상업지역 보행자도로변: 1.0m	

## ⑫ 학교용지(F-1)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F-1	28, 78-2, 78-3, 88, 109-1BL	용도	허용용도	○ 별표1의 F-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F-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30%이하	
		용 적 륜	○ 100%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한 계 선	○ 12~20m 도로변: 건축한계선 1.0~2.0m ○ 소음에 지장이 있고, 주된 개구부가 없을 경우는 3m, 주된 개구부가 있는 경우는 30m			

## ⑬ 공공청사용지(G-1)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G-1	69-2, 79-1, 80-3, 80-4 BL	용도	허용용도	○별표1 G-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1 G-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한계선	○17~20m 도로변: 1.0m	

## ⑭ 주차장용지(H-1)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H-1	74-2, 97-2, 99-2 BL	용도	허용용도	○별표1의 H-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H-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90%이하	
		용 적 률	○1,500%이하	
		높 이	○28m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한계선	○10~20m 도로변: 건축한계선 1.0m	

## ⑮ 체육시설용지(I-1)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I-1	72-2BL	용도	허용용도	○별표1의 I-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I-1의 불허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350%이하	
		높이	○28m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한계선	○10-20m 도로변: 건축한계선 1.0m	

## ⑯ 체육시설용지(I-2) (신설)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I-2	52-2BL	용도	허용용도	○별표1의 I-2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I-2의 불허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이	○2층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한계선	○중로이상 도로에 건축한계선 1m 지정	

## ■ 결정 사유서

결정 내용	결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육시설용지 신설</li> <li>- 도면번호: I-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르신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원당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해 체육시설용지(I-2) 신설</li> </ul>

※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완화적용에 관한 사항  
○ 본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상업용지의 일부 획지에 대해 공동건축을 권장

○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일부 획지의 용적률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있음)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변경있음)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변경		
A-1	1-1, 2, 3, 4, 9, 10, 11, 14, 15, 21, 22, 23-2, 27, 54-1, 54-2, 55, 56, 57, 58-1, 59, 60, 61, 62, 64, 65-1, 66, 67, 79-2, 81-1, 82, 83, 86, 89, 90, 91, 92BL		○ 별표5의 A-1, A-2, A-3, A-4 전면공지, 대지안의 조경	-
A-2	5, 24, 63, 68-1, 77-1, 80-2, 85-1, 87, 103-1, 104, 105, 107-1, 108-2BL			
A-3	7, 8-1, 12, 13, 16, 17-1, 30, 31, 32, 33, 34, 35-1, 36-1, 37-1, 38, 39, 40, 42, 43, 44, 47-1, 49, 50, 52BL	7, 8-1, 12, 13, 16, 17-1, 30, 31, 32, 33, 34, 35-1, 36-1, 37-1, 38, 39, 40, 42, 43, 44, 47-1, 49, 50, 52-1BL		
A-4	6, 25, 29, 45, 46-1, 48-1, 51BL			
B-1	19, 20, 26, 109-2, 110, 111, 112,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BL		○ 별표5의 B-1, C-1, D-1, D-2 전면공지, 대지안의 조경	-
C-1	53-2BL			
D-1	53-1, 69-1, 70, 93-1, 94, 101, 102BL			
D-2	78-1, 80-1, 108-1BL			
D-3	46-2BL(6LT)		○ 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	
E-1	72-1, 74-1, 97-1, 99-1BL		○ 별표5의 E-1, E-2 전면공지, 대지안의 조경	-
E-2	71, 73, 75, 95, 96, 98, 100BL			

주) B-1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 시는 A-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

### ■ 차량 및 주차계획 (변경있음)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변경		
A-1	1-1, 2, 3, 4, 9, 10, 11, 14, 15, 21, 22, 23-1, 23-2, 27, 54-1, 54-2, 55, 56, 57, 58-1, 59, 60, 61, 62, 64, 65-1, 66, 67, 79-2, 81-1, 82, 83, 86, 89, 90, 91, 92BL		○ 별표6의A 차량 및 주차계획 (도면참조)	-
A-2	5, 24, 63, 68-1, 77-1, 80-2, 85-1, 87, 103-1, 104, 105, 107-1, 108-2BL			
A-3	7, 8-1, 12, 13, 16, 17-1, 30, 31, 32, 33, 34, 35-1, 36-1, 37-1, 38, 39, 40, 42, 43, 44, 47-1, 49, 50, 52BL	7, 8-1, 12, 13, 16, 17-1, 30, 31, 32, 33, 34, 35-1, 36-1, 37-1, 38, 39, 40, 42, 43, 44, 47-1, 49, 50, 52-1BL		
A-4	6, 25, 29, 45, 46-1, 48-1, 51BL			
B-1	19, 20, 26, 109-2, 110, 111, 112,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BL		○ 별표6의 B, C, D 차량 및 주차계획(도면참조)	-
C-1	53-2BL			
D-1	53-1, 69-1, 70, 93-1, 94, 101, 102BL			
D-2	78-1, 80-1, 108-1BL			
D-3	46-2(6LT)			
E-1	72-1, 74-1, 97-1, 99-1BL		○ 별표6의 E 차량 및 주차계획 (도면참조)	-
E-2	71, 73, 75, 95, 96, 98, 100BL			
I-1	72-2		○ 별표6의 I-1 차량 및 주차계획 (도면참조)	-
I-2	-	52-2	○ 별표6의 I-2 차량 및 주차계획 (도면참조)	-

주) B-1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

### ■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도면참조	○ 별표7의 보행자전용도로	-

### ■ 단지내 시설물 배치 계획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원당지구단위계획구역	○ 별표8의 식재, 가로장치물, 조명, 포장 등	-

### ■ 공원 및 녹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공원 · 녹지	공원 · 녹지	<p>○ 근린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수림 및 지형을 이용한 휴게, 운동공간 위주로 계획하며 기존지형 및 수림의 훼손을 최소화</li> <li>- 구릉지형 공원으로서 기존수림은 적극적으로 보존 활용하여 계획수림</li> <li>- 지구주민을 위한 놀이, 운동, 휴식, 산책을 위한 공간을 조성</li> <li>- 경계부에 차폐녹지대를 설치하여 공원의 존재인식 및 아늑한 위요 공간을 형성</li> </ul> <p>○ 어린이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성, 흥미성, 쾌적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보호자를 위한 휴식공간 및 인근주민의 시설이용 편리 도모가 가능한 놀이공원 계획</li> </ul> <p>○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의 녹지율을 각각 85%, 45%이상 확보</p>
		<p>○ 완충녹지는 방음효과와 경관성 제고를 위하여 인위적 동산(Mounding)의 조성을 원칙으로 하고 양호한 수림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식생을 복층 구조화 유도</p> <p>○ 속성수종을 선정, 완충녹지로서의 기능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계획</p> <p>○ 경관녹지는 개발로 훼손될 기존수목중 이식 가능한 수목을 녹지대에 이식 처리하여 조기녹화 및 주변 식생과의 조화 도모</p>

■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군부대 협의 등 과업추진 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본 계획에서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규나 인천광역시 조례 및 서구 관련조례를 준용함
- 본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준용함
- 본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

라. 건축물의 용도·형태·배치 등에 대한 계획: (별표참조)

- 【별표1】 건축물의 용도 분류표(변경있음)
- 【별표2】 건축물 배치계획(변경없음)
- 【별표3】 건축물 형태계획(변경없음)
- 【별표4】 건축물 색채계획(변경없음)
- 【별표5】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별표6】 차량 및 주차에 관한 계획(변경있음)
- 【별표7】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별표8】 단지 내 시설물 배치계획(변경없음)

【별표1】 건축물의 용도 분류표 (변경있음)

○ 기정

구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높이
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주택</li> <li>○ 종교시설 (타종 및 화성 장치가 없는 것에 한함)</li> <li>○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li> <li>○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li> </ul>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50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A-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li> <li>-2층이상 주택의 1층이하에 한하며, 규모는 지상층 연면적의 4/10이하</li> </ul>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80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A-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주택</li> <li>○ 종교시설 (타종 및 화성 장치가 없는 것에 한함)</li> <li>○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li> <li>○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li> </ul>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00	2층 이하
A-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li> <li>-2층이상 주택에 1층이하에 한하며, 규모는 지상층 연면적의 1/2 이하</li> </ul>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20	2층 이하
B-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주택</li> <li>○ 다세대/연립주택 (단,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적용에 한함)</li> <li>○ 종교시설</li> </ul>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200	4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C-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립주택 (단,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적용에 한함)</li> </ul>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40	120	4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D-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적용)</li> </ul>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250	20층 이하
D-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적용)</li> </ul>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250	15층 이하
D-3	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				

주) B-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

구분	허용용도	불 허용 도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높이
		전층 불허용도	1층 전면불허용도			
E-1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단독, 공동, 주상복합)</li> <li>○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li> <li>○ 공장</li> <li>○ 창고시설</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제외)</li> <li>○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li> <li>○ 자원순환 관련 시설</li> <li>○ 교정 및 군사시설</li> <li>○ 발전시설</li> <li>○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li> <li>○ 장례식장(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은 제외)</li> <li>○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li> <li>○ 묘지 관련 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육점, 철물점, 난방, 배관, 페인트, 세탁소, 연탄배급소, 장의사, 목공소, 간판업, 염색, 고물상, 건축자재, 알미늄샷사업 등</li> </ul> <p>※ 단, 정육점, 세탁소에 한하여 도로 전면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허용</p>	70	330	3-5층
E-2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단독, 공동, 주상복합)</li> <li>○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li> <li>○ 공장</li> <li>○ 창고시설</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제외)</li> <li>○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li> <li>○ 자원순환 관련 시설</li> <li>○ 교정 및 군사시설</li> <li>○ 발전시설</li> <li>○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li> <li>○ 장례식장 (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은 제외)</li> <li>○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li> <li>○ 묘지 관련 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육점, 철물점, 난방, 배관, 페인트, 세탁소, 연탄배급소, 장의사, 목공소, 간판업, 염색, 고물상, 건축자재, 알미늄샷사업 등</li> </ul> <p>※ 단, 정육점, 세탁소에 한하여 도로 전면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허용</p>	70	550	5-8층

구분	허용용도	불 허용 도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높이
F-1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단, 유치원은 제외)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100	5층이하
G-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종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등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li> <li>○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li> </ul>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250	5층이하
H-1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90	1500	28m이하
I-1	○ 운동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70	350	28m이하

※ 관련 법률 개정에 의한 명칭 변경은 개정 법률을 따름

## ○ 변경

구분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높이
A-1	○ 단독주택 ○ 종교시설 (타종 및 화성 장치가 없는 것에 한함)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50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A-2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2층이상 주택의 1층이하에 한하며, 규모는 지상층 연면적의 4/10이하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80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A-3	○ 단독주택 ○ 종교시설 (타종 및 화성 장치가 없는 것에 한함)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00	2층 이하
A-4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2층이상 주택에 1층이하에 한하며, 규모는 지상층 연면적의 1/2 이하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20	2층 이하
B-1	○ 단독주택 ○ 다세대/연립주택 (단,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적용에 한함) ○ 종교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200	4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C-1	○ 연립주택 (단,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적용에 한함)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40	120	4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D-1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적용)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250	20층 이하
D-2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적용)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250	15층 이하
D-3	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				

주) B-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

구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높이
		전층 불허용도	1층 전면불허용도			
E-1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주택(단독, 공동, 주상복합) ○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장례식장(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은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정육점, 철물점, 난방, 배관, 페인트, 세탁소, 연탄배급소, 장의사, 목공소, 간판업, 염색, 고물상, 건축자재, 알미늄샷사업 등  ※ 단, 정육점, 세탁소에 한하여 도로 전면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허용	70	330	3-5층
E-2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주택(단독, 공동, 주상복합) ○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장례식장 (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은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정육점, 철물점, 난방, 배관, 페인트, 세탁소, 연탄배급소, 장의사, 목공소, 간판업, 염색, 고물상, 건축자재, 알미늄샷사업 등  ※ 단, 정육점, 세탁소에 한하여 도로 전면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허용	70	550	5-8층

구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높이
F-1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단, 유치원은 제외)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100	5층이하
G-1	○ 1종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등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250	5층이하
H-1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90	1500	28m이하
I-1	○ 운동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70	350	28m이하
I-2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00	2층이하

※ 관련 법률 개정에 의한 명칭 변경은 개정 법률을 따름

### ■ 변경 사유서

결정 내용	결정 사유
• 체육시설용지의 용도 결정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시설	•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원당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해 체육시설용지(I-2) 신설

【별표2】 건축물 배치 계획 (변경없음)

용 도	도면 표시	건축물의 배치
단독 주택 용지	A-1 A-2 A-3 A-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남향배치를 권장하기 위해 정남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적용하여 배치 (단,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적용)</li> <li>○ 2면이상 도로에 접한 획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하며, 벽면의 방향이 도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배치</li> <li>○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가 불가능한 구획도로에 접한 획지는 진입구변으로 옥외주차 및 마당을 설치하여 가능한 한 도로와의 이격 유도</li> </ul>
공동 주택 용지	B-1 C-1 D-1 D-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향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적용하여 배치</li> <li>○ 광로변은 교통소음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직각 배치를 권장</li> <li>○ 12m이상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m, 17m도로변의 건축한계선 - 1m, 20m도로변의 건축한계선 - 1.5m</li> </ul> </li> <li>○ 아파트의 층수는 변화 있는 층수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권장</li> </ul>
	D-3	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
상업 용지	E-1 E-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주된 벽면 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li> <li>○ 2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건축물 전면의 도로폭이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할 것</li> <li>○ 10m이상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m, 20m, 40m 도로변에 건축한계선을 각각 1.0m, 1.5m, 3.0m 지정</li> </ul> </li> <li>○ 보행자도로변 양측에 보행환경 향상을 위해 벽면한계선을 1m (1층에 한함)를 지정</li> </ul>
공공 청사	G-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하며, 주차장 및 차량출입구 등 옥외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권장</li> <li>○ 20m 도로변으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 확보(건축한계선: 1m)</li> </ul>

주) B-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

【별표3】 건축물 형태 계획 (변경없음)

용도	도면표시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단독주택용지	A-1 A-2 A-3 A-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지붕면적의 70%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을 설치토록 권장하며,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 ~ 7/10</li> <li>○옥상의 물탱크 설치는 지양하며, 가압급수 방식으로 권장</li> <li>○담장 및 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장 및 대문은 가로공간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단독주택의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담장 1.2m, 대문 1.8m 이하로 규제</li> <li>- 담장과 대문의 형태는 투시형으로 하되 가급적 생울타리 등 자연요소를 활용하도록 권장</li> </ul> </li> <li>○건축물의 외벽은 건축물별로 동일한 재료를 사용(외벽 색상은 원색사용 지양)</li> <li>○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li> <li>○근린생활시설의 1층 서터는 벽면의 50%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권장)</li> <li>○대지를 기준으로 북쪽에 도로가 면해 있을 경우 설비배관 설치하는 측면벽을 이용(권장)</li> </ul>
공동주택용지	B-1 C-1 D-1 D-2  D-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각적 개방감 부여 및 심리적 중압감 배제 등을 위해 주동의 최대길이를 80m 이내로 제한</li> <li>○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원칙으로 함</li> <li>- 경사지붕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li> <li>- 경사지붕의 설치시 구배는 3/10 ~ 7/10</li> </ul> </li> <li>- 경사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li> <li>○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블록 외곽도로에 면한 단지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투시형이나 생울타리 담장으로 1.2m이하 설치</li> </ul> </li> <li>○대지를 기준으로 북쪽에 도로가 면해 있을 경우 설비배관 설치하는 측면벽을 이용(권장)→B1용도에 한함</li> <li>○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li> </ul>
상업용지	E-1 E-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면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m 이상의 간선도로변에 접하는 대지내의 건축물은 입면형태가 주변건축물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li> </ul> </li> <li>○건축물의 입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1층전면의 서터는 벽면의 50%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li> </ul> </li> </ul>

주) B-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반영

### 【별표4】 건축물 색채 계획 (변경없음)

용도	도면 표시	건축물의 색채
단독주택용지	A-1 A-2 A-3 A-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색의 사용을 금하며(강조색은 가능) 저채도 색채를 사용</li> <li>○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li> <li>○ 검정색 계통의 외벽 마감재료 사용을 지양하여 밝은 분위기의 도시경관 형성 (단 강조색은 가능)</li> <li>○ 지붕의 색과 울타리를 동일계통 색채사용 권장</li> </ul>
공동주택용지	B-1 C-1 D-1 D-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랜드마크(Landmark) 기능 및 단지내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밝고 명량한 색조계열 사용</li> <li>○ 인천시의 시색인 청색 또는 구색인 하늘색을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토록 권장</li> <li>○ 지붕의 색과 울타리를 동일계통 색채사용 권장</li> </ul>
	D-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li> </ul>
상업용지	E-1 E-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활동축으로서 밝고 명량한 색조계열을 사용하며, 원색의 사용을 금함 (강조색은 가능)</li> <li>○ 건축물의 전면색채는 동일용도의 인접건축물과는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하여 식별성 강화</li> </ul>

주) B-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

※ 색채는 파랑, 회색, 녹색, 적황색 계통을 위주로 권장

※ 색채의 분류

- 색채의 분류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등 3가지로 분류하며, 이들 색채의 적절한 사용을 통하여 다양하면서도 통일감 있는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
- 주조색: 대상지내 건축물의 도로변에 접하는 가장 잘 보이는 면에 배색되어 시각적 인상을 결정하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70%이상을 차지
- 보조색: 주조색 보다는 좁은 면적에 배색되어 주조색 및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10~30%를 차지
- 강조색: 건축물의 선이나 점같이 매우 좁은 면의 특히 강조할 곳에 배색되어 주조색이나 보조색과 강한 대비를 이루면서 전체에 활력을 주고 변화를 주는 색이며 외벽면적의 10%미만을 차지

【별표5】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용도	도면 표시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단독주택용지	A-1 A-2 A-3 A-4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인도와 동일한 포장재료 및 패턴사용을 유도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화단, 담장, 노상주차장 등) 설치를 금지하며 인접보도와 같은 높이로 조성</li> <li>○ 차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차도와 단차를 없애고 동일한 포장재료 사용 등으로 차량통행의 장애요소 제거</li> <li>○ 전면공지 지정 시 지상에 대한 공공의 이용권을 확보하고 지하는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li> </ul>
		대지내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광역시건축조례 기준을 준용하여 대지면적의 10%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li> <li>○ 조경수는 인천시 시화인 장미의 식재를 권장</li> </ul>
공동주택용지	B-1 C-1 D-1 D-2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인도와 동일한 포장재료 및 패턴사용을 유도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화단, 담장, 노상주차장 등) 설치를 금지하며 인접보도와 같은 높이로 조성토록 유도</li> <li>○ 차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차도와 단차를 없애고 동일한 포장재료 사용등으로 차량통행의 장애요소 제거</li> <li>○ 전면공지 지정시 지상에 대한 공공의 이용권을 확보하고 지하는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li> </ul>
		대지내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아파트단지의 녹지면적은 30% 이상으로 확보하여 조경 식재</li> <li>○ 조경수는 인천시 시화인 장미의 식재를 권장</li> <li>○ 12m이상의 도로변(공동주택지내) 대지에서 주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9조에 의해 설치하는 조경시설을 지정한 곳은 공공이 24시간 이용 가능한 가로변 소공원(쌈지공원 - Pocket park)으로 조성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쌈지공원을 조경시설로 조성시 45㎡이상 설치</li> </ul> </li> <li>○ 지상주차장이 넓은 경우, 사이에 화단 등을 조성하여 식재</li> </ul>
	D-3	전면공지 대지내조경	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
상업용지	E-1 E-2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인도와 동일한 포장재료 및 패턴사용을 유도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화단, 담장, 노상주차장 등) 설치를 금지하며 인접보도와 같은 높이로 조성</li> <li>○ 차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차도와 단차를 없애고 동일한 포장재료 사용 등으로 차량통행의 장애요소 제거</li> <li>○ 전면공지 지정시 지상에 대한 공공의 이용권을 확보하고 지하는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li> <li>○ 40m 도로변 상업지역의 모퉁이변(도면참조)을 공개공지로 확보(규제)하여 이용자의 보행환경 활성화 및 휴게공간, 쉼터 역할을 유도</li> <li>○ 공개공지는 최소면적 45㎡이상으로 확보</li> <li>○ 공개공지의 설치형태는 피로티구조(1층 높이 4m이상), 쌈지공원구조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 가능</li> <li>○ 공개공지의 조성은 전면의 인도 및 전면공지와 조성형태를 통일시켜서 조성하게 하며, 인접대지의 공개공지나 쌈지공원이 있는 경우에는 연계 조성을 권장</li> </ul>
		대지내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경수는 인천시 시화인 장미의 식재를 권장</li> <li>○ 40m도로변의 대단위시설에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에 식재로 수림대 조성</li> </ul>

주) B-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

【별표6】 차량 및 주차에 관한 계획 (변경있음)

○ 기정

용도	도면 표시	차량 및 주차에 관한 계획	
단독주택용지	A-1 A-2 A-3 A-4	차량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필지의 진출입은 연결 도로중 폭이 좁은 도로에서의 진출입 권장</li> <li>○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는 가구의 장·단변 교차로 부근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li> <li>○ 차량출입불허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차로 측단,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등으로부터 10m이내 구간 (단, 필지의 규모가 협소하여 차량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li> </ul> </li> </ul>
		주차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 및 다가구 주택 건축시 가구당 1대 이상 주차시설 확보 (권장)</li> </ul>
공동주택용지	B-1 C-1 D-1 D-2	차량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출입구는 단지별로 1개씩만 허용함으로써 차량 혼잡방지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li> <li>○ 단지내 동선을 Cluster 형식으로 계획하여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차량동선과 보행동선과의 상충을 최소화</li> <li>○ 원활한 진출입이 이루어지도록 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교차 되도록 하며, 교차부에서 30m이상 이격하여 배치</li> <li>○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외곽도로와 T형 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차량출입구가 타 단지의 차량출입구와 30m이상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형 교차를 유도</li> </ul>
		주차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한 설치기준을 적용</li> <li>○ 지하주차장은 아파트와 직접 연결되도록 지하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권장</li> <li>○ B-1용도(다세대/연립)에서의 건축시 가구당 1대이상 주차시설 확보 (권장)</li> </ul>
	D-3	차량 동선 주차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li> </ul>
상업용지	E-1 E-2	차량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m폭 이상의 도로에서 주차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 (통로의 폭은 대지경계선에서 각각 3m이상 확보)</li> <li>○ 20m폭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가각부의 경우 각 10m구간에서의 주차출입을 금지</li> <li>○ 통로주차랩프 및 카엘리베이터의 시작부분은 도로와 접하는 건축선에서 최소 3m이상 이격시켜서 대기주차에 의한 보행장해 방지</li> </ul>
		주차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준용함</li> <li>○ 300㎡이하의 대지가 옥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2개 대지별로 공동으로 주차장 설치를 권장하여 주차장의 효율을 높이고 주차출입구의 개소 축소</li> </ul>
체육시설용지	I-1	차량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m폭 이상의 도로에서 주차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 (통로의 폭은 대지경계선에서 각각 3m이상 확보)</li> <li>○ 20m폭 미만의 도로의 가각부의 경우 각 3m구간에서의 주차출입을 금지</li> </ul>
		주차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준용함</li> </ul>

○ 변경

용도	도면 표시	차량 및 주차에 관한 계획	
단독주택용지	A-1 A-2 A-3 A-4	차량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필지의 진출입은 연결 도로중 폭이 좁은 도로에서의 진출입 권장</li> <li>○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는 가구의 장·단변 교차로 부근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li> <li>○ 차량출입불허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차로 측단,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등으로부터 10m이내 구간 (단, 필지의 규모가 협소하여 차량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li> </ul> </li> </ul>
		주차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 및 다가구 주택 건축시 가구당 1대 이상 주차시설 확보 (권장)</li> </ul>
공동주택용지	B-1 C-1 D-1 D-2	차량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출입구는 단지별로 1개씩만 허용함으로써 차량 혼잡방지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li> <li>○ 단지내 동선을 Cluster 형식으로 계획하여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차량동선과 보행동선과의 상충을 최소화</li> <li>○ 원활한 진출입이 이루어지도록 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교차 되도록 하며, 교차부에서 30m이상 이격하여 배치</li> <li>○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의외곽도로와 T형 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차량출입구가 타 단지의 차량출입구와 30m이상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형 교차를 유도</li> </ul>
		주차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한 설치기준을 적용</li> <li>○ 지하주차장은 아파트와 직접 연결되도록 지하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권장</li> <li>○ B-1용도(다세대/연립)에서의 건축시 가구당 1대이상 주차시설 확보 (권장)</li> </ul>
	D-3	차량 동선 주차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li> </ul>
상업용지	E-1 E-2	차량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m폭 이상의 도로에서 주차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 (통로의 폭은 대지경계선에서 각각 3m이상 확보)</li> <li>○ 20m폭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가각부의 경우 각 10m구간에서의 주차출입을 금지</li> <li>○ 통로주차램프 및 카엘리베이터의 시작부분은 도로와 접하는 건축선에서 최소 3m이상 이격시켜서 대기주차에 의한 보행장애 방지</li> </ul>
		주차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준용함</li> <li>○ 300㎡이하의 대지가 옥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2개 대지별로 공동으로 주차장 설치를 권장하여 주차장의 효율을 높이고 주차출입구의 개소 축소</li> </ul>
체육시설용지	I-1	차량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m폭 이상의 도로에서 주차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 (통로의 폭은 대지경계선에서 각각 3m이상 확보)</li> <li>○ 20m폭 미만의 도로의 가각부의 경우 각 3m구간에서의 주차출입을 금지</li> </ul>
		주차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준용함</li> </ul>
체육시설용지	I-2	차량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출입은 연결 도로중 폭이 좁은 도로에서의 진출입 권장</li> <li>○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는 가구의 장·단변 교차로 부근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li> </ul>
		주차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준용함</li> </ul>

■ 변경 사유서

결정 내용	결정 사유
• 체육시설용지의 차량 및 주차계획 신설	• 체육시설용지(I-2) 신설에 따른 차량 및 주차계획 신설

**【별표7】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도면 표시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A-1, A-2 A-3, A-4 B-1, C-1 D-1, D-2 E-1, E-2	보행자 전용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의 통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도로로서 포장패턴이나 상징적인 환경장치물 설치를 유도하여 장소성과 활동성을 제고</li> <li>○ 녹지조성보다는 포장 및 시설물 위주로 설치하고, 인접대지내 공지 및 전면공지와 연계 조성</li> <li>○ 공공성이 있는 건축물에 장애인 램프 설치를 고려하여 대지의 높이와 주출입구의 높이차를 15cm 이내로 권장</li> </ul>
D-3	보행자 전용도로	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

**【별표8】 단지 내 시설물 배치계획 (변경없음)**

구분	단지내 시설물 배치계획
가로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시설물의 형태, 크기, 배치, 구조 및 재료는 주위환경과 어울리도록 설계</li> <li>○ 보행이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li> <li>○ 대중 인식도가 높은 옥외시설물 또는 안내판 등의 시설물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li> <li>○ 상호보완적 가로시설물을 집합시켜 여러 기능을 갖도록 설계</li> <li>○ 형태 상호간에 통일성, 시각적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하여 가로 장치물 설계</li> </ul>
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특성 및 계절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수종을 선택하여 가로별로 특징적 경관을 연출하도록 식재</li> <li>○ 서구의 구목인 은행나무 등의 식재 유도</li> <li>○ 차도로부터 0.5m, 건물외벽으로부터 2~3m 이상 띄어서 식재</li> <li>○ 도로 교차점 주변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좌우 20m의 구간내에 수목의 식재 금지</li> </ul>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차량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재료의 사용</li> <li>- 재료는 아스팔트 및 유색아스팔트 사용</li> </ul> </li> <li>○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의 지루함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패턴의 블록 사용</li> <li>- 포장구획을 소단위로 하여 친근감 유지</li> </ul> </li> <li>○ 연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횡단로 등에서는 경사면으로 처리</li> <li>- 재료는 화강석(인조화강석)등 차량에 의해 파손되지 않는 재료 사용</li> </ul> </li> </ul>
조명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의 교통량, 도로폭, 바다포장의 재질, 건축물의 재질(반사정도) 등을 고려하여 높이, 위치, 밝기 등을 결정하여 설치</li> </ul> </li> <li>○ 보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속적으로 일정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하며, 가급적 보도폭 전체로 빛이 닿도록 계획</li> </ul> </li> </ul>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교, 계단, 경사로의 설치 및 조명시설, 옥외가로시설물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반 관련규정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도로구조령의 도로조명 시설기준, 옥외광고물법,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등)</li> </ul>
옥외광고물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광고물법 및 동법시행령,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에 따름</li> </ul>

####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0-131호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1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7. 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1블록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덕평산업개발(주) (대표자 한동주)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1블록
  - 나. 대지면적 : 21.818㎡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72,806.1978㎡ (지하2층, 지상29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5개동 510세대 및 이에 따르는 부대·복리시설
  - 마. 사 업 비 : 189,833,080천원
4. 사업기간 : 2019. 12. 01. ~ 2022. 12. 31.
5. 변경사항
  - 가. 엘리베이터홀 높이 변경

나. 옥상 고가수조 구획설치 등

다. 집수정 추가 설치

라. 주민공동시설·근로자 휴게실·주민회의실 출입문 변경, 환기창 설치

마. 사업주체 대표자 변경

바. 오기 및 누락사항 반영 등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133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7. 20.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봉수대로 321-1 외 1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07.20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사

고시일 : 2020-07-20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862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321-1 (석남동)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2	인천광역시 서구 급곡동 0	인천광역시 서구 소담2로 22 (급곡동)	20191223	소담로에서 두 번째 분기되는 도로	식품단지 2가구 6,7획지
3	인천광역시 서구 월창동 393-203	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177번길 88 (월창동)	20090922	북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월창동 394-63	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245번길 10 (월창동)	20090922	북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329, 64-340	인천광역시 서구 월당대로428번길 28 (왕길동)	20081231	월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3	인천광역시 서구 비지니스로181번길 10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7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5-11	인천광역시 서구 비지니스로181번길 13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8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3-17	인천광역시 서구 비지니스로193번길 2-8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9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405	인천광역시 서구 설원로138번길 21 (대곡동)	20130730	설원로 시작지점부터 약 1,3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449-4	인천광역시 서구 설원로138번길 19 (대곡동)	20130730	설원로 시작지점부터 약 1,3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46-37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73번길 3-15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1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46-4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73번길 3-9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1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41-1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73번길 4-8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0-07-20

원번	도로명주소	폐지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68번길 15-49 (신현동)	건물 멸실	20090922	새오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오성빌라
2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68번길 15-47 (신현동)	건물 멸실	20090922	새오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68번길 15-45 (신현동)	건물 멸실	20090922	새오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68번길 15-43 (신현동)	건물 멸실	20090922	새오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13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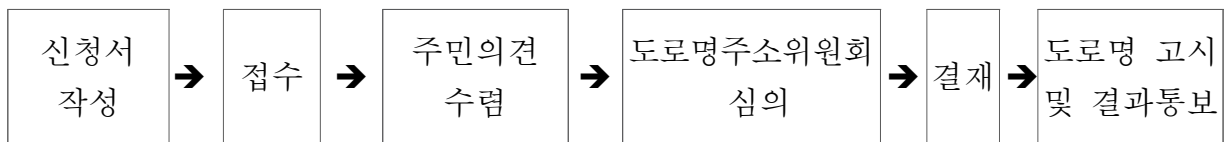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7. 20.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고 시 일 : 2020. 7. 20.
2. 고시방법 : 구보,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에 관한 사항(붙임 조서와 같음)
4.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절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032-560-48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명부여 조서 및 도로구간 1부. 끝.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부여 조서 및 도로구간

연번	도로 구분	예비도로명	기 점		종 점		제 원		기초간격 (m)	관할 행정구역	도로명 부여사유
			읍면동	지번	읍면동	지번	길이(m)	폭(m)			
1	로	매밭로	당하동	1056	당하동	산 16	1442	12	20	원당동	매의 형상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매밭"이라는 옛 자연지명에서 착안
2	길	매밭로13번길	당하동	354-1	당하동	342	181	8	10	원당동	매밭로 시점으로부터 1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길	매밭로14번길	당하동	354-1	당하동	188	339	8	10	원당동	매밭로 시점으로부터 1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길	매밭로18번길	당하동	342	당하동	320-1	210	8	10	원당동	매밭로 시점으로부터 1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길	매밭로90번길	당하동	188	당하동	199-1	297	12	20	원당동	매밭로 시점으로부터 9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로	발산로	원당동	537-1	원당동	469	537	16	20	원당동	"발산"이라는 옛 지명에서 착안
7	길	발산로5번길	원당동	511-1	원당동	469-3	230	16	20	원당동	발산로의 시점으로부터 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로	바리미로	원당동	489-3	원당동	434-13	386	16	20	원당동	"바리미"라는 옛 지명에서 착안
9	길	바리미로5번길	원당동	489-3	원당동	434-13	280	16	20	원당동	바리미로의 시점으로부터 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길	솔모랭이길	원당동	356-3	원당동	376	458	8	10	원당동	소나무가 우거졌다는 뜻의 "솔모랭이"라는 옛 지명에서 착안
11	로	당곡로	당하동	산132-7	원당동	366	3730	20	20	원당동	"당곡"이라는 옛 지명에서 착안
12	길	당곡로3번길	원당동	262	원당동	252	273	8	10	원당동	당곡로의 시점으로부터 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길	당곡로3번안길	원당동	262	원당동	257-1	228	8	10	원당동	당곡로3번길에서 분기되는 도로
14	길	당곡로4번길	원당동	262	원당동	242-1	190	12	10	원당동	당곡로의 시점으로부터 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길	당곡로4번안길	원당동	262	원당동	244-1	215	8	10	원당동	당곡로4번길에서 분기되는 도로
16	길	당곡로24번길	원당동	225	원당동	242-1	250	8	10	원당동	당곡로의 시점으로부터 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	길	당곡로24번안길	원당동	251-1	원당동	246-1	150	8	10	원당동	당곡로24번길에서 분기되는 도로
18	로	가우리들로	당하동	362-1	당하동	165	623	16	20	원당동	"가우리들"이라는 옛 지명에서 착안
19	길	가우리들로11번길	당하동	388-1	당하동	152-2	152	8	20	원당동	가우리들로의 시점으로부터 1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	길	가우리들로12번길	당하동	388-1	당하동	146-2	252	8	10	원당동	가우리들로의 시점으로부터 1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1	길	가우리들로27번길	당하동	146-2	당하동	148-2	294	12	20	원당동	가우리들로의 시점으로부터 2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2	길	푸르내길	당하동	150-1	당하동	160-2	226	8	10	원당동	"푸른 물이 흐르는 맑은 시내"라는 뜻의 순우리말에서 착안
23	길	푸르내1길	당하동	150-1	당하동	160-2	225	8	10	원당동	푸르내길에서 첫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24	길	푸르내2길	당하동	150-1	당하동	160-2	261	8	10	원당동	푸르내길에서 두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25	길	반월로81번길	오류동	1791	오류동	336	561	6	20	오류왕길동	반월로의 시점으로부터 8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6	길	소담로58번길	금곡동	474-2	금곡동	469-2	250	14	20	검단동	소담로의 시점으로부터 5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7	길	북향단지로101번길	원창동	394-8	원창동	516	302	15	20	신현원창동	북향단지로의 시점으로부터 1,0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8	길	북향단지로102번길	원창동	394-8	원창동	511-1	426	15	20	신현원창동	북향단지로의 시점으로부터 1,0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9	길	북향단지로123번길	원창동	394-8	원창동	516	289	15	20	신현원창동	북향단지로의 시점으로부터 1,2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0	길	북향단지로124번길	원창동	394-8	원창동	511-1	433	15	20	신현원창동	북향단지로의 시점으로부터 1,2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도로명 부여(안) 1 ~ 5



○ 도로명 부여(안) 6 ~ 10



○ 도로명 부여(안) 11 ~ 17



○ 도로명 부여(안) 18 ~ 24



○ 도로명 부여(안) 25 ~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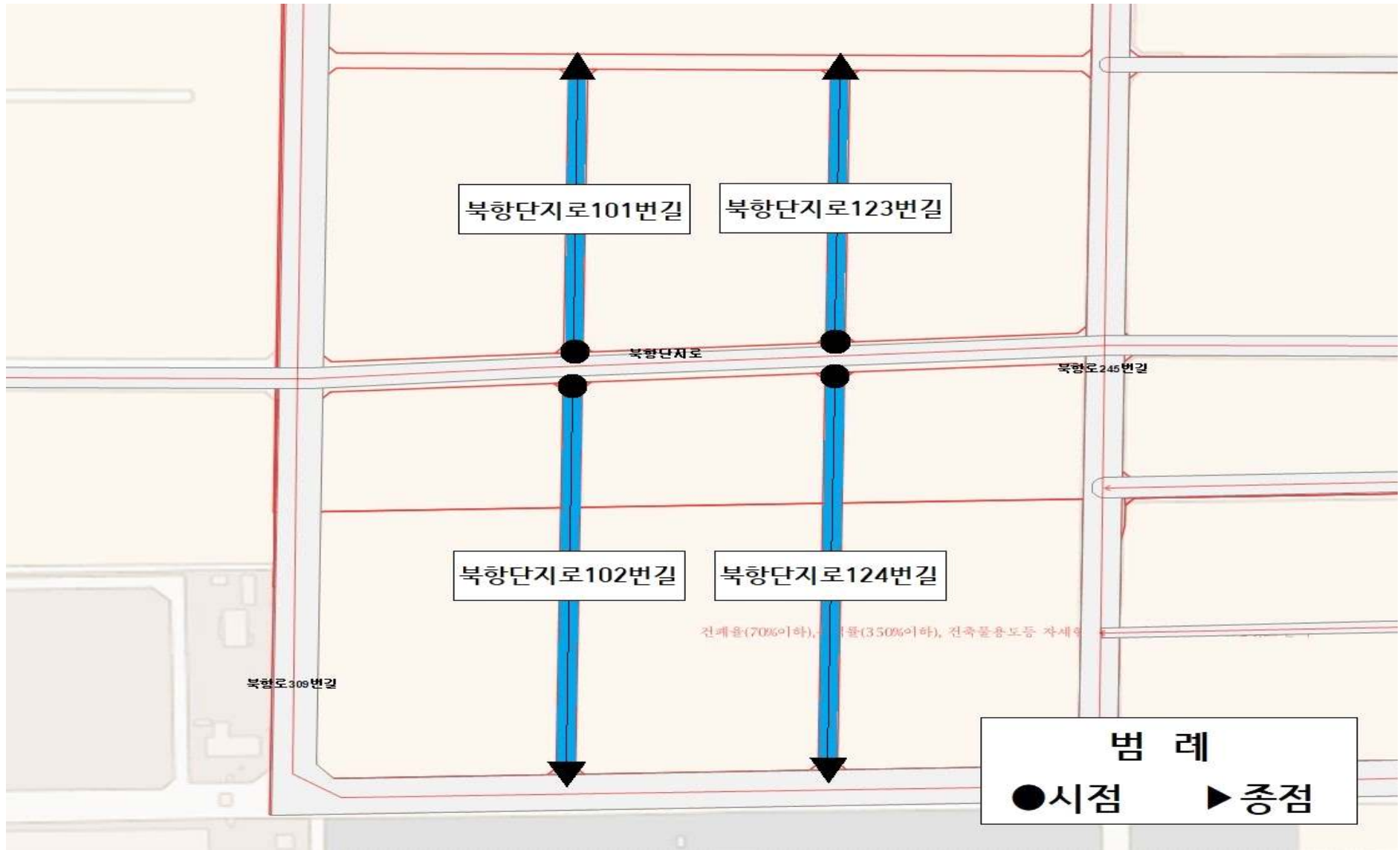


반월로81번길



소담로58번길

○ 도로명 부여(안) 27 ~ 30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135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21조에 따라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7. 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고 시 일 : 2020. 7. 20.
2. 고시방법 : 홈페이지 및 구보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붙임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032-560-48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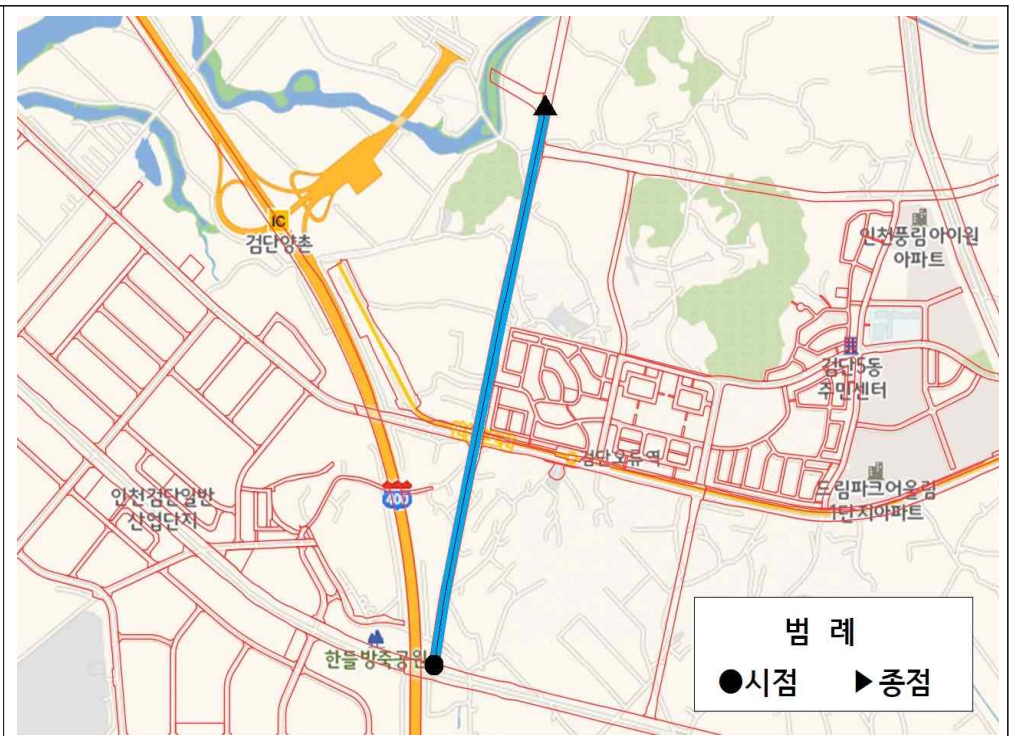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변경 조서

연번	내역	도로명	기 점		종 점		중심선	길이 (m)	폭 (m)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관할 행정구역	도로구간 변경 고시일	유사도로명과 동일도로명	도로구간의 변경 사유
			읍면동	지번	읍면동	지번					시작	끝				
1	기존	반월로	오류동	383-11	오류동	231-1	도면 참조	383	25	20	1	40	오류왕길동	2020.7.20.	없음	검단산업단지~검단IC간 도로개설공사로 인한 도로구간 변경
	변경		오류동	434-564	오류동	198-1		1574	32	20	1	158				

## ○ 도로구간 변경 전·후 도면



변경 전



변경 후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1108호

## 행복한 서로이음 (임대주택) 입주희망자 모집공고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주택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무상(최소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행복한 서로이음 (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임대대상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주희망자를 모집합니다.

2020. 7. 1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신청기간: 2020. 7. 22. ~ 2020. 8. 10. 18시 까지 (20일간)
2.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 서구이면서  
신혼부부에 해당 하는 사람

구 분	입 주 자 격	증빙서류
내 용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 예식장 계약서(예비부부 검증용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서류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역·직장)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 3. 신청방법

- 접수처: 서구청 본관 3층 주택과 [☎ 032-560-4736, Fax 032-560-2736]
- 신청방법: 입주신청서(붙임1) 및 증빙서류와 붙임3 동의서를 구비 후 직접 방문(방문접수는 근무시간에 한함) 또는 팩스로 신청  
(※ 팩스 신청시 반드시 유선으로 도착 여부 확인 필요하며 서류미비시 접수 불가)

### 4. 입주자 선정방법

-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입주 우선순위는 【 ①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에 해당하는 사

람 ② 자녀수가 많은 사람 ③ 신청인의 인천 서구 연속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 ①②③ 순서로 결정함

○ 입주예정자 사정상 미입주를 감안하여 예비당첨자 3배수도 지정

#### 5. 결과발표

○ 일 시: 2020. 8. 19.(수) 14:00 이후

○ 방 법: 당첨자와 예비당첨자에게만 개별 통보(유선) 하며, 미당첨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6. 입주가능(예정)일: 입주자 결정 이후 즉시(8월말에서 9월말 기간 중으로 예상되며 리모델링 공사 진행 상황과 임대자와 협의 후 결정)

#### 7. 임대주택 현황

임대주택 번호	위 치	모집 세대	임대 현황				임대료(만원)		임대기간
			구 조	해당 층	방수	면적(m <sup>2</sup> )	보증금	월세	
2020-1	인천 서구 석남동 556-43 한양빌라 제1동 2층 제201호	1	조적조/ 슬래브	2	2	31.59	300	-	3년
2020-2	인천 서구 가정동 560-17 금잔디하우스 제8동 2층 제202호	1	조적조/ 슬래브	2	2	34.88	500	-	5년

#### 8. 유의사항

○ 신혼부부가 임대주택 1개만 신청해야 함. (2개 신청 불가)

○ 위 임대주택은 인천광역시 서구와 주택소유자가 협약을 통해 3-5년간 신혼부부에게 임대하기로 약정한 행복한 서로이음 임대주택임

\* 3-5년이란, 주택소유자가 서구와 협약을 맺고 최초 임대차 계약한 날로부터 3-5년을 말함

○ 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결과는 서구와 주택소유자간의 협약을 실현하기 위한 임의방식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기타 관계 법률에 의한 효력이나 권리관계와 무관하며, 주택소유자와 별도 협의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서구는 위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며, 시설물의 유지관리 권한이 없고 주택소유자가 건축물 관리를 함

○ 임대차계약은 건축물소유자와 입주자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함

9. 기타 문의사항: 서구청 주택과 주택관리팀 ☎ 032-560-4736

10. 입주신청서식 및 입주설명서: 서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 붙임 1. 행복한 서로이음(임대주택) 입주신청서 1부.  
2. 행복한 서로이음 빈집 입주 설명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끝.



## 붙임 2

<h2 style="text-align: center;">행복한 서로이음 빈집 입주 설명서</h2> <h3 style="text-align: center;">[임대주택번호 2020-1, 3년 임대]</h3>							
건물현황	소재지	인천 서구 석남동 556-43 한양빌라 제1동 2층 제201호			건축 년도	1989년	
	층수 / 면적(m <sup>2</sup> )	2층 / 31.59m <sup>2</sup>			구조	조적조 / 슬래브	
	시설현황	주거형태 (단독, 다세대 등)	방	주방	화장실	기타	
		다세대	2	1	1	거실1	
임대계획	공급인원 및 입주대상			임대료(만원)			입주예정일
	공급인원	입주자격	남녀 구분	전세	월세	보증금	
	1세대 (2인이상)	신혼부부	없음	-	-	300만원 (삼백만원)	2020. 8월말 - 9월말
비치 품목							
참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설명서는 입주희망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임</li> <li>▷ 해당주택은 3년간 임대조건이며, 기간 만료 전 퇴거를 원할 경우 사유 발생 즉시 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이후 연장은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li> <li>▷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li> </ul>						

## 행복한 서로이음 입주 설명서

### 위치도



### 현장 사진



☞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현재 외부 전경 사진 첨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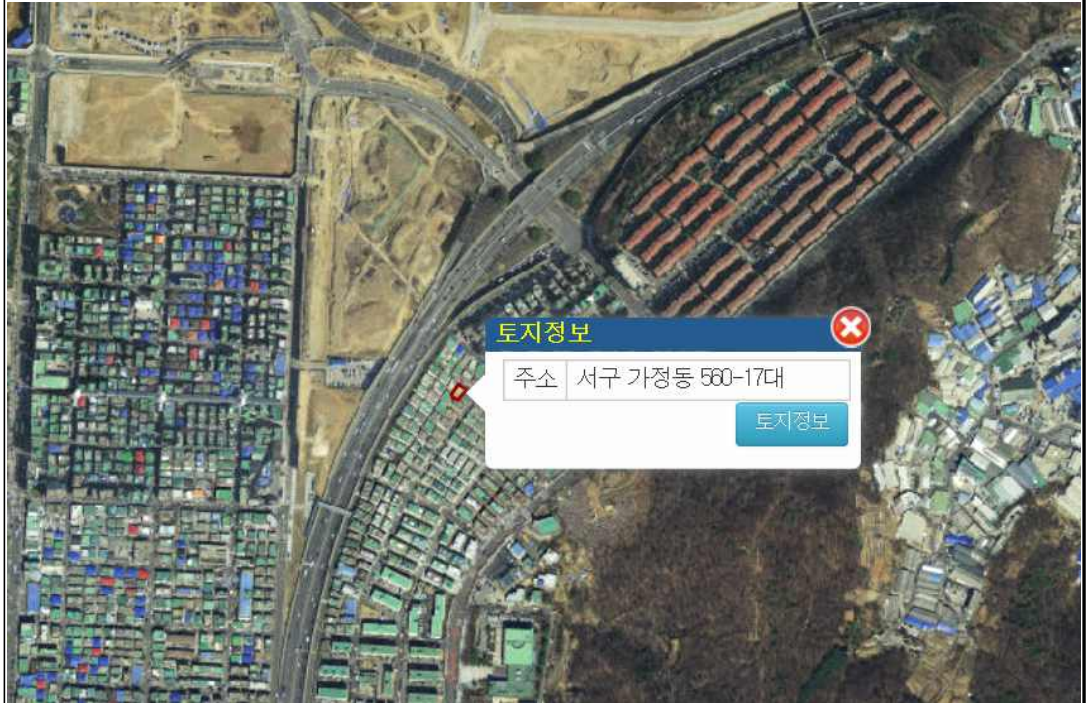
# 행복한 서로이음 빈집 입주 설명서

[임대주택번호 2020-2, 5년 임대]

건물현황	소재지	인천 서구 가정동 560-17 금잔디하우스 제8동 2층 제202호			건축 년도	1990년	
	층수 / 면적(m <sup>2</sup> )	2층 / 34.88m <sup>2</sup>			구조	조적조 / 슬래브	
	시설현황	주거형태 (단독, 다세대 등)	방	주방	화장실	기타	
		다세대	2	-	1	거실 겸 주방 1	
임대계획	공급인원 및 입주대상			임대료(만원)			입주예정일
	공급인원	입주자격	남녀 구분	전세	월세	보증금	
	1세대 (2인이상)	신혼부부	없음	-	-	500만원 (오백만원)	2020. 8월말 - 9월말
비치 품목							
참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설명서는 입주희망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임</li> <li>▷ 해당주택은 5년간 임대조건이며, 기간 만료 전 퇴거를 원할 경우 사유 발생 즉시 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이후 연장은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li> <li>▷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li> </ul>						

## 행복한 서로이음 입주 설명서

위치도



현장  
사진



☞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현재 외부 전경 사진 첨부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인천광역시 서구청

2. 이용 및 제공정보

- 개인식별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건물현황 등

3. 수집 목적

-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신청시 접수시 개인확인과 연락을 위한 자료 수집

4.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본 사업 추진시까지 (1년)

5. 고지사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 - 1116호

##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20. 7. 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력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기본원칙
-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범위
-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경비의 지원

### 3.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총무과장)에게 2020. 8.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5937, FAX 032-560-2710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기본원칙
- 나.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범위
- 다.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 라.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경비의 지원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
- 나. 예산조치 : 2021년 본예산에 22,900천원 반영 예정
- 다. 합 의 : 기획예산실,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 1)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력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및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써 장애인관

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3.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p>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의견 제출인 주소</p> <p style="text-align: right;">(전화 :                      )</p> <p style="text-align: right;">성명                      (서명 또는 인)</p> <p>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p>	
비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p> <p>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p>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1141호

## 인천광역시 서구 신거북시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20. 7. 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제정이유

「신거북시장 주차장 및 판매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주차장 내 판매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판매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함.

###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안 제4조 ~ 안 제7조)

사용·수익허가,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사용료, 사용료의 반환

다. 사용자의 관리 (안 제8조 ~ 안 제12조)

판매시설 사용의무, 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권의 양도 금지, 관리위탁 등, 실태조사 및 지도감독

라.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안 제14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경제에너지과장)에게 2020. 8. 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435, FAX 032-560-2730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 인천광역시 서구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 1. 제안이유

「신거북시장 주차장 및 판매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주차장 내 판매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판매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함.

##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안 제4조 ~ 안 제7조)

사용·수익허가,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사용료, 사용료의 반환

다. 사용자의 관리 (안 제8조 ~ 안 제12조)

판매시설 사용의무, 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권의 양도 금지, 관리위탁 등, 실태조사 및 지도감독

라.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안 제14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제22조(사용

료), 제23조(사용료의 조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14조(사용료),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3)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제21조(사용·수익허가)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실, 여성보육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07.20. ~ 2020.08.10.)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또는 별첨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020-1141호

## 인천광역시 서구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판매시설”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한 공공시설물 내에 별도 구획으로 마련한 점포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판매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제6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제4조(사용·수익허가)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에 대하여 그 목적 및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를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사용허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자에게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입점자의 선정기준 및 자격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판매시설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구청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판매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① 판매시설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판매시설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징수 하되, 최초 허가 또는 허가갱신 할 때 1년분 사용료를 선납하고, 이후 계속사용자의 경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한 때에도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허가 취소

또는 해지, 폐업하였을 때에는 취소 또는 해지, 폐업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3.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6조에 따라 감액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4. 전통시장법 제18조에 따라 공동시설 면적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적용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판매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판매시설 사용 해지를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 계산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판매시설 사용료 별지 제5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장 사용자의 관리

제8조(판매시설 사용의무) ① 사용자는 판매시설 재산을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판매시설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구청장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관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의 허가 없이 판매시설을 훼손하는 등의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판매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판매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

체 없이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 및 해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한 경우
2. 판매시설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3. 1개월 이상 휴업·폐업 또는 사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10조(사용권의 양도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관리위탁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판매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매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이 조례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위·수탁 관리계약에 따라 판매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고 판매시설을 관리·운영한다.

제12조(실태조사 및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점포의 사용자, 사용료 등 사용·수익허가 상태 등 판매시설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리수탁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상태,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등 판매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하고,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 ]사용허가 신청서 [ ] 갱신허가 신청서

※ 뒷면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사용자 (대표자)	법인명 (단체명)		법인등록 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 남/여)		(남 / 여)		
	주소	(전화번호)					
사용점포	층	제	호	허가면적			m <sup>2</sup>
사용기간 (영업시간)	년 월 일 ~ 년 월 일(개월) ( : 시부터 : 시까지)						
사용료	귀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						
사용조건	귀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사용(갱신) 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판매시설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3. 설계설명서, 설계도면(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제출 서류)	1.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뒷면)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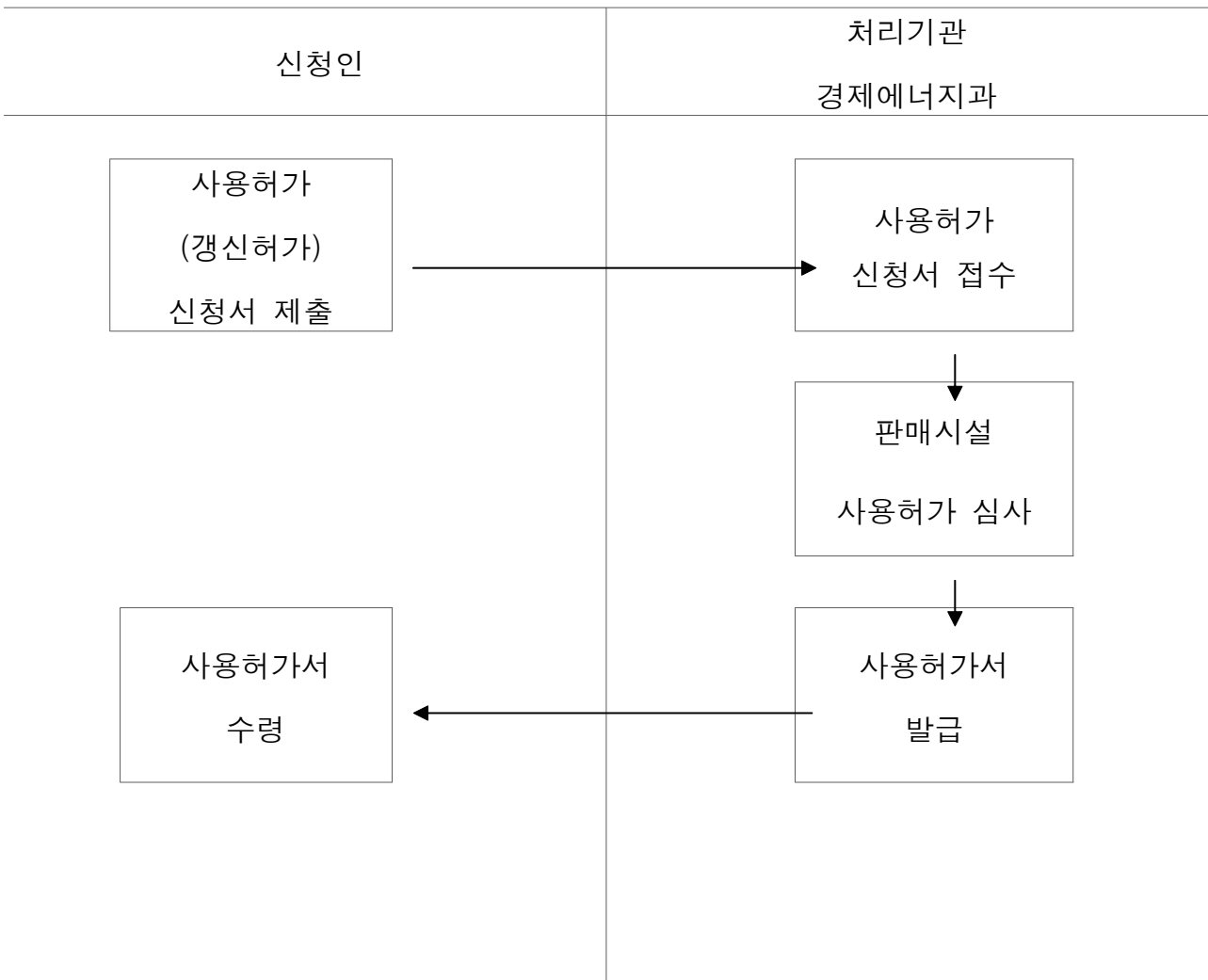
### [동의]

판매시설 사용허가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신청 유효 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별지 제2호서식]

허가 제 호			
<b>공유재산(판매시설 점포) 사용허가서</b>			
허가 구분	<input type="checkbox"/> 사용허가 <input type="checkbox"/> 갱신허가		
성명 (법인명) (단체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용점포	층 제 호	면 적	m <sup>2</sup>
사용허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p>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p> <p style="text-align: center;">불임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p> <p>불임 : 허가조건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p>			

[별지 제3호서식]

## 허 가 조 건

- 제1조(사용목적물)**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 )층( )호 및 그 부지
-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 제6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
  2. 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허가 받은 재산의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0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인천광역시 서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해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인천광역시 서구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81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 행위라 하더라도 인천광역시 서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결정에 의한다.





## [별표 1]

## 판매시설 사용료 (제6조 관련)

## 가. 사용료 요율

대상	분류	기 준	적 용 요 율
판매 시설	토지 건물	전용면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 한 시가를 반영한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공용면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 한 시가를 반영한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에서 80% 감액한 금액

## 실·과별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과별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20.7.20~'20.8.10. ○ 내 용 - 의견수렴	-	-	-
입 법 예 고			
협의개요	제 출 자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20.7.20~'20.8.10. ○ 내 용 - 구보게재 - 인터넷	-	-	-